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국제재판관할 조약 성안작업

- 작업반 최종(9차) 회의(2025. 10. 20.~24.)의 논의경과 -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 준 혁

〈목 차〉

- | | |
|--|---------------------------------|
| I. 조약성안작업과 작업반 및 그 9차 회의의 개요 | 2.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제8조 제2항)의 약간의 증보 |
| II. 작업반 9차 회의 전 사전검토 | 3. 조문안의 전체적 손질 |
| 1. 2025년도 상무정책이사회 결정에 따른 안건의 한정 | 4. 자문서 안에 관한 논의 |
| 2. 작업반 9차 회의 안건 | IV. 향후 절차 |
| III. 작업반 9차 회의 논의 경과 | |
| 1. 정보·논의문서(Information and Discussion Paper)의 검토 | |

I. 조약성안작업과 작업반 및 그 9차 회의의 개요

미국은 브뤼셀협약¹⁾과 루가노협약²⁾의 성과에 자극받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국제

1) ‘민상사의 재판관할과 판결집행에 관한 브뤼셀협약’(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68년에 성립. 1978년과 1980년에 신규 계약국 가입과 함께 개정됨. 브뤼셀협약이라고 하면 1968년본, 1978년본, 1980년본을 통칭한다. ‘민상사의 재판관할과 판결승인집행에 관한 2000. 12. 22. 이사회 규정 (EC) 제44/2001호’{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브뤼셀 제1규정 2000년본)에 의하여 대체됨. 유럽연합이 국제사법 분야에서 입법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만든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브뤼셀협약의 개정에 해당함. 브뤼셀 제1규정 2000년본은 2012년에 전면 개정(recast)되어 민상사의 재판관할 및 판결승인집행에 관한 2012. 12. 12.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제1215/2012호{Regulation (EU) No 121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재판관할, 국제적 소송경합, 외국판결 승인집행 문제에 관한 신규 다자조약을 교섭할 것을 제안했다(1992년 서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민상사의 국제재판관할 및 외국판결승인집행 조약’ 성안작업이 시작되었다.

첫 결과물은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1999년 예비초안³⁾과, 그 연장선상에서 외교회의(Diplomatic Session) 논의결과를 담은 2001년 잠정초안⁴⁾이다. 그러나 1999년 예비초안이 나올 때부터 이미 미국은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고, 2001년 외교회의가 강행되긴 했지만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와해되었다.

둘째 결과물은 관할합의협약(2005)⁵⁾이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1958)(뉴욕협약)⁶⁾에 기능적으로 대응되는 조약부터 만들고자 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recast))(브뤼셀 제1규정 2012년본, 브뤼셀 개정 제1규정이라고도 함)가 됨.

- 2) ‘민상사의 재판관할과 판결집행에 관한 루가노협약’(Lugano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88년 성립, 2007년 개정. 2007년 개정본은 브뤼셀 제1규정 2000년본을 거의 똑같이 본받았다.
- 3)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4)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Nineteenth Session, Commission II: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Summary of the Outcome of the Discussion in Commission II of the First Part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6 - 20 June 2001: Interim Text” (Prepared by the Permanent Bureau and the Co-reporters).
- 5)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현 체약국은 37개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약칭 REIO) 1개, 총 38개이다. 유럽연합과 그 27개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에이레,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빠냐, 스웨덴)(이 중 덴마크는 유럽연합의 국제사법 분야 조약체결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추후 별도 가입) 외에, 알바니아, 바레인, 멕시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연합왕국의 10개국이다. 서명국(서명만 한 나라)은 중국,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코소보, 미국의 4개국이다. (이상 영어 국호 알파벳 순.) 한국은 미서명. 영연합왕국은 원래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이 체약국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체약국이 되었으나(2015. 10. 1.), 유럽연합 탈퇴(2020. 2. 1., 그 발효 전 유예기간은 2020. 12. 31. 종료) 후에도 체약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0. 9. 28.에 동의서를 기탁했다(2021. 1. 1 발효). 이에 관한 논쟁의 개관은 Tobias Lutzi, “Brexit and PIL: Belgian Supreme Court confirms the application of the 2005 Hague Convention to jurisdiction clauses designating UK courts concluded after 1 October 2015”, Conflict of Laws.net, <conflictoflaws.net>, 6 May 2025 참조. 유럽연합 헌법기구인 위원회(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또는 Commission)의 입장은 European Commission, “Notice to stakeholders: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and EU rules in the field of civil justic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27 August 2020, p. 9에 정리되어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체약국 현황 표는, 이런 굴곡과 논쟁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영연합왕국이 체약국이 된 날’을 2015. 10. 1.로 표기할 뿐이다.
- 6) 대한민국은 1973년 가입.

셋째 결과물은, 간접관할규정 목록을 포함하는 ‘민상사의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약칭 재판협약)(2019)⁷⁾이다. 남은 일은 재산관계 분야의 국제재판관할(직접관할)과 직접관할 행사 단계에서 국제병행소송을 다루는 협약을 만드는 일이다. 이 협약의 교섭작업이 “국제 재판관할(병행소송) 조약성안작업”{Jurisdiction (Parallel Proceedings) Project}이다.⁸⁾ 상무정책이사회(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약칭 CGAP) 2025년도 회의에서 직접관할은 이번 조약성안작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므로(아래 II. 1.), 상무정책이사회 2026년도 회의 내지 특별위원회에서부터는 조약성안작업의 명칭도 아마 “병행소송 조약성안작업”(Parallel Proceedings Project)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직접관할을 먼 훗날의 주제로 미룬 채, ‘넓은 의미의 국제재판관할·외국판결승인집행 조약성안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재판관할(국제병행소송) 조약성안작업은 전문가그룹(Experts Group)의 결정에 따라 작업반(Working Group)이 설치되어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그룹에 이어 작업반에서도 일본 히토즈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 학장인 다케시타 케이스케(竹下啓介) 교수가 의장을 맡았다.⁹⁾

7)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현 협약국은 32개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 1개, 총 33개이다. 유럽연합과 덴마크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에이레,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파냐, 스웨덴),(이들은 유럽연합이 협약국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협약국이 됨) 외에, 알바니아, 안도라,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영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우루과이이다. 서명국은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러시아, 미국의 6개국. (이상 영어 국호 알파벳 순.) 한국은 미서명. 한국의 향후 행보와 관련하여 특히 눈여볼 부분은 우루과이이다. 중남미의 국제사법 선진국 중 하나로 (과거에는 쿠바, 베네주엘라와 함께, 지금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함께) 손꼽히는 나라로서, 재판협약에 최초로 서명하여, 발효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관할합의협약에 대해서는 아직 서명도 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합의법정지가 아닌 나라의 경우에는 관할합의협약보다 재판협약의 협약국이 되는 실익이 더 크고 부담은 더 적을 수 있음을 예시한다.

8) 특이하게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Project”라는 말은 ‘신규 조약 성안작업’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로 자리잡아 있다. 예컨대 “Judgments Project”는 재판(의 승인집행)을 다루는 새로운 조약을 성안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어로 “Judgments Project를 가리켜—재판 프로젝트”, “Judgments (Parallel Proceedings) Project를 가리켜—재판관할(병행소송) 프로젝트”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의미한 번역 포기일 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Project라고 하면 위의 기술적 용어로서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어로 “프로젝트”라는 말은 더욱 그렇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규 조약 성안작업’ 또는 ‘조약 성안작업’이라는 번역어를 써야 한다.

9) 관례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외교회의의 이 조약성안작업 부분에서도 다케시타 교수가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반 9차 회의가 2025. 10. 20.(월)부터 24.(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한국에서는 최윤정 판사(현장), 본 보고자(온라인), 총 2인이 참석했다. 작업반은 그 결과물로 작업반 초안(Draft Text of the Working Group)을 내놓고, 이번 9차 회의로 종결되었다.

작업반 초안의 조문 목차는 다음과 같다.¹⁰⁾

제I장 범위 및 정의

제1조 범위

제2조 범위로부터의 제외(적용제외)

제3조 정의

제4조 소송계속(訴訟繫屬)

제II장 병행소송(중복소송)

제5조 병행소송(중복소송)의 중지(진행중단), 각하 및 재개

제6조 [전속적][우월적] 관할/연결

제7조 당사자자치

제8조 관할(국제재판관할)/연결

제9조 보다 적절한 법원(법정)의 결정

제10조 보다 적절한 법원(법정)의 결정에 쓰이는 요소들

제III장 관련소송

제11조 보다 적절한 법원의 결정과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제12조 하나의 법원에 의한 관련소송 전체의 재판

제13조 하나의 법원에 의한 관련소송의 재판

제14조 별개 소송들의 계속진행

제IV장 협력과 연락(소통)

제15조 협력

제16조 연락(소통)장치

[제17조 공동변론기일]

10) 꺾쇠는 원문. 조문번호와 표제를 포함하여 조(條) 전체를 꺾쇠로 에워싸고 있는 경우, 아래에서는 조문번호 및 표제에 꺾쇠를 쳤다. 괄호는 역자. 괄호 안에는 달리 번역할 가능성, 의역(意譯), 또는 번역상 추가할 만한 문구를 담았다.

제18조 [주권,] 절차적 권리 및 정보의 기밀성

제V장 일반규정

제19조 사법거절(司法拒絶)의 회피

[제20조 절차남용의 방지]

[제21조 공서(公序)]

제22조 특정 사항에 관한 (적용제외)선언

제23조 통일적 해석

작업반에서든, 특별위원회에서든, 외교회의에서든, 조약의 실질을 이루는 부분의 조문 안¹¹⁾의 작성작업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 회원(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이 작업문서에 조문안을 기재하여(제안이유는 적어도 되고 구두로만 설명해도 된다)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논의의 소재가 생기고,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다. 그래서 조문안의 실질적 부분에 관한 논의는 “교섭” 작업의 성격을 띤다. 물론 의장은 상설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안건 안을 제시한다.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누군가 논의의 순서를 정하고 시간을 할당하고 의사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장이 조문안을 공식적으로 스스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상설사무국이 조문안 작성에 관한 논의를 이끄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라는 국제기구의 행정을 맡은 보조적 조직이므로, 전문가회의, 작업반, 특별위원회, 외교회의를 통틀어, 논의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거나 일정한 논의방향을 시사하는 것조차 극도로 부적절하다.¹²⁾ ‘아래에서 위로의’

11) 특히 작업반의 논의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특별위원회와 외교회의에서의 논의는 이 부분 외에 기술적 부분에도 미친다. 기술적 부분은 상설사무국이 논의의 기초가 될 초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상설사무국의 행정업무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 개최하는 역할 등에 관해서는 상설사무국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적 부분을 포함하여 조문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일은 회원들의 몫이다.

12) 그러나 특히 국제가족법 분야에서 기존 조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보통 특별위원회의 형식이 된다)에서는 양상이 자못 다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족법 분야에는 여권(女權)운동, ‘아동의 권리’ 운동 등의 권리중심법학(right-based jurisprudence){특정한 권리의 구현을 지상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원칙, 전통, 이익형량에 의한 갈등 봉합 내지 中庸의 추구 등에서 눈을 돌리는 접근—극렬파로 흐르기 쉽고, 특정 이념과 결합하여 급진주의(radicalism)나 근본주의(fundamentalism)로까지 흐를 위험도 있다}가 대두되고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 여파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까지 미쳤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권력기구가 국제가족법 분야에서 독트린을 하달하더라도, 국제연합 내에는 ‘가족법 분야의 국제사법’이라는 의미의 국제가족법을 맡은 산하 기구가 따로 없다. 그래서 국제가족법 분야에서는, 국제연합의 상명하달식, 바람을 일으켜 밀어붙이는 식의 접근을 실질적 조약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향하여 몰아치게 된다. 필자는 법무부의 위촉을 받아 참석했던 ‘1980년 아동탈취협약 및

상향식 접근에 의존한다. 작업반 내에서 특별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가령 의장이나 작업반에서 의장을 보좌하는 상설사무국 서기관¹³⁾)은 앞장서서 조문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대표단이 다자조약 교섭을 포함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몸을 사리다 못하여 ‘논의의 재료 제공’이라 할 수 있는 ‘작업문서 제출’을 꺼리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곤 한다.¹⁴⁾ 그러나 이것은 상향식(bottom up) 논의방법을 따르는 회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1996년 아동보호협약의 실제적 작동에 관한 특별위원회 7차 회의’(Seventh Meeting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1980 Child Abduction Convention and the 1996 Child Protection Convention) (2017. 10. 10.-17.)에서는 그런 논의현장을 목도한 일이 있다. 상설사무국은 국제아동법 및 국제아동권리 운동계의 생각을 반영하여 보고서 등 서면을 미리 준비하여 사전 배부했다. 실제 회의에서는 상설사무국의 인사가 연단에 앉아 발언을 주도했다. 그 인사는 그 서면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발언용으로 미리 준비한 대본을, 급하게 억양 없이, 마치 책 읽듯이 읽었다. 그러면서도 참석자들로부터 일치된 지지표명을 받기를 당연히 기대했다. 이런 급속도의 논의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결론과 권고”(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안의 논의 및 채택 안건으로 넘어갔다. “결론과 권고” 안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즉, 다른 회의자료들과 함께 여러 주 전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내 해당 특별위원회 창에 게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장을 하나씩 읽거나, 문장 번호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이견이 있는지 묻는 일은 없었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범위에서(가령 한두 페이지 내지 서너 페이지 범위 내) 일정 범위의 문장 번호들을 언급하면서 의견 표명을 구하는(가령 ‘몇 번에서 몇 번까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느냐’ 묻고 뜻을 들이면서 기다리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서 안과 “결론과 권고” 안을 미리 준비해 놓고 밀어붙이려 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반대의견이 많이 표명되는 일이 몇 차례 생겼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가족법관계에 관한 법원 외의 私的 합의에 대해서도 판결을 승인하듯이 승인하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 논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결론 안과, ‘원래의 거주지로부터 이탈한 이탈주민(displaced persons)이 생기면서, 국경을 사이에 두고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특히 핵가족 단위에서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특별히 힘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결론 안이 여기에 속했다. 즉, 이런 결론 안은 어느 한 쪽의 고려에만 치우친 것이고, 대증요법(對症療法)의 성격이 강해서,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고 예상 가능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여서, 각국의 중견 판사들이 주로 참석했으므로, 이런 신중한 반응은 당연히 예상할 만했다. 그러나 상설사무국 측 인사는 극도로 당황하면서도,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단상에 앉아 좌중(座中)과 대치(對峙)했다. 이 중 한 안건으로 회의 진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영국(England and Wales) 행정부의 한 참석자는 ‘왜 굳이 일정한 해결방안을 지지하기로 결의한다는 식의, 미리 준비한 문구를 고집하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지’에 의문을 표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 중요성에 유념했다는 문구 정도로 수정하면 되지 않는가? 실제로 우리가 그 중요성에 유념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고까지 발언했다. 영국 행정부 내 국제아동실무 전문가인 참석자가 이렇게 겸허하게, 자상하며 건설적인 발언으로 순조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상설사무국은 끝끝내 버티면서, 참석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고집을 꺾을 것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대적 회의진행법과 구두발언에 공을 들이는 의사소통방식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영국 행정부 참석자는 그런 고전적 태도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설사무국에 속한 영미권 또는 영미권에 가까이 있는 인사들은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13) Melissa Ford (국적 호주).

14) 그러면서도 회의 진행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적극적인 경우가 가끔 있다. 2019년 재판협약을 채택한 제22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답지 않은 이런 소극적 접근 때문에, 한국이 건설적으로 참여는 제약받게 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분위기 파악에 주력하면서 참석하고 나서, 한국의 법률가들 앞에서는 국제회의 참여자라는 권위를 내세우려 하는 일이 패턴화되어 있다. 회의에서의 수동성과, 한국에 돌아온 뒤의 태도(‘권위에의 호소’와 ‘해외의 권위에의 굴종’)는 둘다 부적절하다.¹⁵⁾ 책임감 있게 회의에 임하는 접근방법의 정립이 요망된다.

II. 작업반 9차 회의 전 사전검토¹⁶⁾

1. 2025년도 상무정책이사회 결정에 따른 안건의 한정

가. 2025년도 상무정책이사회 결정

상무정책이사회 2025년도 회의에서는 국제재판관할 조약성안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결정을 했다.

차 외교회의(2019. 6. 18.~7. 2.)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과(당시 편제 및 명칭) 측 참석자는 지식재산권의 적용제외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반트러스트(경쟁)법의 적용제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상설사무국이 준비하여 의장이 제안하고 회의 개시 직후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건표(Agenda: 안건의 논의 순서와 일정)에 따르면, 반트러스트(경쟁)법 적용제외 안건은 다음 주에 논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발언 도중 의장이 끼어들어 이 점을 주지시키기까지 했다. 미리 발언해 둘 수 있도록 의장과 사전 조율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찍 귀국해야 해서 다음 주에는 자리에 없을 것이므로 지금 발언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끝내 발언을 이어나갔다.

15) 다만, 심리학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심리현상 및 행태로 설명될 수 있다. 해외의 권위에 굴종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국제회의에서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또, 해외의 권위에 굴종하려는 마음을 미리 먹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가서는 누가 권위를 가졌는지를 잘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앞으로 그의 권위에 기대려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국제회의에서 남들에게 의지했을 뿐이므로, 한국에 돌아와서 원용할 것이라고는 해외의 권위 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이 건설적으로 기여하려고 애썼다면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다른 사람의 건설적 기여 노력을 눈여겨보면서 대응했던 경험, 그리고 이런 헌신적 기여 노력들을 아우르기 위해 함께 애쓰고 양보, 절충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한 일이 없으면 그런 노력에 수반되는 경험도 없고, 이야기할 경험도 없게 된다. 더구나 이런 행태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평소에 해외의 권위에 의존하는 데 너무 비중을 두었으므로, 국제적 논의의 장에 가서도 ‘자신이 기대는 해외의 권위자가 제시한 방향으로 매진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외에는, 기여할 것이 별로 없게 된다. 그래서 다시 기가 죽게 되고, 해외의 권위에 굴종할 마음을 먹게 되며, 건설적 기여를 할 엄두를 내지 않게 된다.

16) 이 장은 본 보고자가 2025. 10. 15.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에 제출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국제재판관할(국제병행소송) 조약성안작업 작업반 9차 회의(2025. 10. 20.~24.) 사전검토보고서”의 II와 III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래서 9차 회의 전의 문맥이 남아 있는데, 사전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공공에 보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어, 대부분 그대로 두었다.

첫째, 작업반은 2025년 하반기에 마지막 회의인 9차 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제8조 제2항(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조문안을 재검토하고 손질한다. 그러나 정책 결정이 필요한 논점(policy issues)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거나 추가하지는 않는다.¹⁷⁾

둘째, 작업반 9차 회의 후, 상설사무국(Permanent Bureau)은 “개방되고 포괄적인(inclusive) 서면상의 의견조회(consultation) 절차”를 진행한다. 그 목적은 “이 협약의 운영자(operators)가 될 자들, 특히 실무가과 판사로부터 피드백을 취합”하기 위함이다. 이 의견조회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은 작업반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주해(explanatory notes)와 질문들을 작성한다.¹⁸⁾ 상설사무국은 제출된 의견(회신)들을 한 건의 문서로 취합하여, 상무정책이사회 2026년 회의 전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전 회원에게 제공한다.¹⁹⁾

셋째, 상무정책이사회는 2026년도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신규조약 성안작업)를 계속할지, 그렇게 하는 경우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1차 회의를 2026년 6월말 전에 개최할지, 그보다 나중에 열지 결정한다.²⁰⁾

넷째, 직접관할규정을 두는 일은 이 프로젝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아직 고려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완결 후 별도의 후속 프로젝트로서 직접관할 규정들을 만들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는 고려가 더 진척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위와 같이 별도의 후속 프로젝트로서 이 안건을 다루지는 상무정책이사회에서 결정한다.²¹⁾

나. 주목을 요하는 점

작업반 9차 회의 및 뒤이을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9차 회의의 실질적 안건은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제8조 제2항) 정리에 제한되었다(위 첫째 결정). 한편으로는, 제8조 제2항의 논의가 8차 회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17) 이상 CGAP 2025(상무정책이사회 2025년도 회의), Conclusions & Decisions, no. 7.

18) 이상 CGAP 2025, Conclusions & Decisions, no. 8.

19) CGAP 2025, Conclusions & Decisions, no. 9.

20) CGAP 2025, Conclusions & Decisions, no. 10.

21) CGAP 2025, Conclusions & Decisions, no. 11. 원문은 조심스러운 표현 속에 미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 “CGAP noted that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direct jurisdiction rul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work on the Jurisdiction Project, the consideration of direct jurisdiction rules could be further developed in a separate and subsequent project, subject to CGAP’s decision.”

시간 관계상 논의하지 못했다는 논의경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 논점의 논의를 특별위원회에 미룬다는, 8차 회의에서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원래 구상은 작업반을 6차 회의로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중복소송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영미법계, 브라질, 멕시코 등의 그룹과 유럽연합, 스위스 등의 그룹 간의 격렬한 의견대립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원활히 진척되지 못했다. 전문가그룹(Experts' Group)과 상무정책이사회가 주문한 주제들, 특히 관련소송 병행과 “유연한 교신 및 협력” 장치에 관한 조문안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상설사무국은 작업반 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장의 출신국인 일본에서 7차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전제로²²⁾ 8차 회의까지 열도록 했다.²³⁾ 그래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Christophe Bernasconi)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7차 및 8차 회의에서, ‘현실성이 높은 주제만을 다루도록’ 이번 조약성안작업의 안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작업반 구성원도 8차 회의에서는 안전 제한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8조 제2항에 관한 논의가 9차 회의 안전에 포함된 것은 자연스럽다. 하나의 이유는 제8조 제2항에 대한 조문안이 6차 및 7차 회의에서 의장의 주도로 겨우 통합한 것에 불과하고, 7차 및 8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부분이 이번 협약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의 조문 중 당장 자주 쓰이게 될 부분은 관련소송 병행(제3장)이 아니라 국제이중(중복)소송(제2장)이 될 텐데, 제8조 제2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제2장의 작동양태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둘째, 9차 회의를 앞둔 조문안에는 정책적 입장을 달리하는 복수의 선택지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아예 상이한 대안들을 병치하기도 하고, 일정한 내용을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꺾쇠 안에 넣어 두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조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부분의 정리는 소위 “정책”적 논점(“policy issues”)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문을 단일화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상설사무국에 의한 전문직 실무가들에 대한 자문(의견조회)절차가 서면상 의견조회로 국한된 점(위 둘째 결정)도 주목을 요한다. 2024년도 상무정책이사회 결의에서는

22) CGAP 2024(상무정책이사회 2024년도 회의), Conclusions & Decisions, no. 5.

23) CGAP 2024, Conclusions & Decisions, no. 4.

“1회 또는 수회의 온라인 워크숍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상설사무국에게 그런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는 방안을 탐색하도록 요청했다.²⁴⁾ 이것은 어떤 법률이든 이해관계인에게 충성해야 하며, 학문적으로 뛰어난 입법이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실제로 쓰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무총장의 신념²⁵⁾이 반영된 것이다. 사무총장은 기세를 몰아, 7차 및 8차 회의에서 이 방침을 강하게 피력했다. 작업반 회의라 해도 회의를 한 번 열려면 재정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기도 했다.²⁶⁾

그러나 7차 및 8차 회의에서 작업반 구성원들(회원국들 및 유럽연합)은 온라인 이해관계인 회의에 대하여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그 발언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해관계인 회의는 비효율성이다, 이해관계인 측에서도 일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크게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아직 조약이 완성되지 않고 교섭 중인 상황이어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도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둘째, ‘민상사의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약칭 재판협약)(2019)의 성안과정에서 열린 온라인 이해관계인 회의의 성과도 저조했다. 이해관계인들로부터는 참석자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발언도 거의 없었다.

24) CGAP 2024, Conclusions & Decisions, no. 6.

25) 사무총장은 작업반 7차 및 8차 회의에서 이런 신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26) 그런데 작업반 회의는 상설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다. 그러므로, 의장의 여비와 숙박비를 파견국(일본)이 자발적으로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하면, 작업반 회의를 상설사무국 회의실에서 열기 위하여 커피 브레이크 비용과 전기료 증가 외에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사무총장 내지 상설사무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네덜란드 밖에서 회의를 주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장소를 옮기면, 상설사무국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상설사무국 측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보통 최소 4명)의 여비(旅費)와 숙박비가 추가로 든다. 그래서 회의 주최국에서 이 비용까지 부담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결국 네덜란드 밖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상설사무국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커피 브레이크와 전기료뿐이다. 그러나 이런 비용은 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네덜란드 요식업의 고물가 때문에 커피 브레이크의 비용이 크다면, 상설사무국 직원들처럼 상설사무국에 비치된 커피·온수기계를 1유로씩 내고 사용하면 된다. 전기 사용량 증가는 상무정책이사회에서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이런 경상비용을 들어, 회의규칙에 따른 공정한 의견교환에 의하여 의견을 모아 나가는 작업방식을 백안시하는 것은 법형성권력(法形成權力)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회의에 의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모은다는 것인가? 하나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처럼 국제기구의 관료조직 주도로 조약 성안작업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사법 통일조약의 교섭이라는 본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미 만들어진 조약의 해석과 운영요령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제기구 관료조직 자체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하달(下達, top down)식으로 발령하는 것이다. 국제연합의 아동 관련 기구와 UNCITRAL은 이미 이런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옥상옥(屋上屋)의 중층구조를 만들어 국제사법 형성권력의 위계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설립취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 현장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역할에 관한 언급이 없다.

게다가, 본 보고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교섭 중에 교섭국들의 회의 기회를 줄여 이해관계인 회의에 할애하는 것이 입법과정의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의 여지도 남는다. 국가를 건너뛰고 현장의 이해관계인(stakeholders)과 직접 소통하려 하는 시도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들여와 대의제(代議制)를 “외곽”에서 “때리”는²⁷⁾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도는 장단점을 가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가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균형이 흔들려 규범의 내용이 변칙적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위험을 동시에 지닌다.

이런 문제점들 중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는 선에서 봉합한 상무정책이사회 2025년도 회의의 결정은 대체로 적절해 보인다.

다만 이 절차의 건설적 기여를 낙관하기는 조심스럽다. 공개적 의견조회절차를 진행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는다 한들, 관심 제고의 효과가 얼마나 생길지는 선불리 긍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국제아동법의 분야에서는 권리중심 접근 내지 권리증진운동에 종사하는 행동가 그룹의 위력이 현저하다. 그들은 일종의 “운동권”을 이루어,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이 입법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법을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개 제출하며, 특정 사건의 재판이 법발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나 재산관계의 국제민사소송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역량 동원(mobilization)’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특정 이념을 지도원리로 삼아 조직된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입법과

27) 1980. 5.의 광주사태에서 김대중(훗날 1998~2003 제15대 대통령 역임)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 파악 및 평가로써 서울대 정치학과 노재봉 교수가 강의 중 사용했다고 하는 표현(“김대중씨의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치기술”, 김진국, 오피니언: 분수대, “외곽 때리기”, 중앙일보 2006. 12. 7.)에서 표현을 빌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위 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정치사 서술상의 다양한 의미부여 중 하나를 국가 입법에서 채용하여 역사학을 국유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역사적 평가는 어디까지나 역사학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 법률이나 사법(司法)이 역사학을 몰수(沒收)해서는 곤란하다. 필자도 법률가이지만, 그런 참람(僭濫)은 법률에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국내정치 및 지역정서적으로 예민한 부분 때문에 연구자가 징역형과 징벌적 위자료로 박해받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당대사의 객관적 연구에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무색투명하고 사안의 외연 면에서 유연성과 포괄성이 높은 위 표현을 사용한다. “사태”라는 용어는 편협적 어감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난 단순한 사건, 사고라는 평가가 담겨 있지 않느냐고 공격해서는 곤란하다. 앞글자가 겹친다는 이유로, 사건, 사고와 비슷한 말처럼 여긴다면 큰 착각이며 무지일 것이다.

정 개입이 헌법(불문의 세계헌법, 국제기구의 헌법, 국가헌법 등)적으로 얼마나 정당한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무작정 많이 “참여”한다고 다 좋은 일은 아니다.

넷째, 직접관할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외한다는 결정이 드디어 상무정책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졌다. 부속 의정서(Protocol)에 수록한다든지 비구속적 문서(non-binding instrument)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면서 병행소송협약과 나란히 교섭하는 방안조차도 불 채택되었다.

2. 작업반 9차 회의 안건

가. 우선적 관할사유(제8조 제2항)

9차 회의 전 조문안은 최우선적 관할사유(제6조, 제7조)의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을 제8조 제2항에 규정한다. 이것은 재판협약 제5조 제1항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번 조약의 취지에 맞게 다듬는 작업이 남아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책적 논점이 개재된다.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은 다음을 차례로 담고 있다. 피고의 상거소(a호). 자연인 피고의 주된 사무소·영업소(b호). 자연인 피고의 종된 사무소·영업소로서 그 활동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c호). 계약상 의무이행지로 합의되었거나 계약준거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곳으로서, 피고의 그 거래에 관한 활동이 법정지와 목적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d호). 부동산 임대차(나 등록)에 관한 부동산소재지(e호). 부동산 물권으로 담보된 계약상 채권에 대하여, 그 계약상 청구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부동산 물권에 관한 청구와 함께 제기된 경우(f호). 사망, 상해, 유체재산의 상실이나 훼손을 일으킨 데 대한 비계약상 채무에 관한 행동지(작위지 또는 부작위지)(g호). 신탁의 내부 관계에 관한 신탁증서 상 국제재판관할 선택 또는 신탁관리지 지정(h호). 반소(i호). 응소(j호). 끝으로, 마지막 호(k호)의 내용을 비워두어, 새로운 호(號)를 추가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한다.

피고상거소지관할(a호)에 관해서는 다음 논점이 남아 있다. 첫째, 원피고 역전형 국제중복소송이 많음을 고려할 때, “피고”라는 표현이 적절한가?²⁸⁾ 재판협약 제5조 제1항 a호도 “피고”라는 표현을 피했다. 물론 그 이유는 달랐다. 재판협약에서는 당사자가 원고로서 한

채약국에서 패소했으면 다른 채약국에서 다시 다룰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번 협약에서도 “피고”라는 표현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 둘째, 상거소를 따지는 기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²⁹⁾ 셋째, 피고가 복수인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³⁰⁾

중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특별관할(c호)에 관해서는, 조문안이 소송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바꾸어, 그 사무소·영업소의 활동시 법정지에 그 사무소·영업소가 있었을 것을 요구하도록 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³¹⁾

계약사건에 대한 의무이행지관할(d호)에 관해서는, 계약상 의무별로 의무이행지관할을 정하는 d호의 기본적 접근을 얼마나 완화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즉, “소송”의 “목적”(“object” of the “proceedings”)이 된 채무의 이행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규정할지, 아니면 “청구권”(claim) 내지 “소송”(action)이 그 채무(의무이행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에 “관한”(concerns) 것이면 충분하다고 규정할지의 문제이다.³²⁾

부동산 임대차(나 등록)에 관한 부동산소재지관할(e호)에 관해서는, 다음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d호와 마찬가지로, 사안이 부동산 임대차상의 청구일 것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청구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가? 둘째, 소재지 외에 등록지도 e호에 함께 규정할 것인가?³³⁾

응소관할(소위 변론관할)(j호)에 관해서는, 다음 두 논점이 남아 있다. 첫째, 이 관할사유도 최우선적 관할사유로 삼아야 하는가? 둘째, 국제재판관할의 존부나 행사에 대한 다툼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했던 경우에는 응소관할을 부정하는 단서 절을 규정함에 있어, 누구에게 명백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³⁴⁾

28)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8조 제2항 a호에 딸린 주(註).

29)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8조 제2항 a호에 딸린 주(註). 그런데 이 주(註)가 이 논점을 지적하는 것이 지가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니다.

30)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8조 제2항 a호에 딸린 주(註).

31)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8조 제2항 c호에 딸린 주(註).

32)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8조 제2항 d호에 딸린 주(註).

33)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이상 제8조 제2항 e호에 딸린 주(註).

34)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이상 제8조 제2항 j호에 딸린 주(註).

나아가, 우선적 관할사유를 추가할지의 논점도 열려 있다.³⁵⁾

제8조 제2항이 최우선적 관할(제6조, 제8조)과 제9조(보다 적절한 법정의 결정)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도 논의를 요한다.³⁶⁾

전략적 소송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논의를 요한다.³⁷⁾

나. 조문안의 정리를 위하여 마무리되어야 할 논점

조문안 자체에 주(註), 각주 또는 꺾쇠로 표시된 부분은 작업반 9차 회의에서 정리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중 중요하고 논의가능성이 높은 논점만 아래에 정리한다.

첫째, 전속적 관할합의와 임시적 보호조치(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도 적용제외사항 목록(제2조 제1항)의 일부로서 적용제외된다고 규정할지의 논점이 남아 있다.³⁸⁾

둘째, 국내법상 자국의 전속관할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적용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다. 작업반 2차 회의 전까지는 이를 규정하는 호(號)가 제2조 제1항의 적용제외사항 목록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선언장치(제22조)가 채택됨으로써 이 호는 불필요해졌다.³⁹⁾ 이 부분을 각주에 언급해 두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로 보낼 작업반 최종 조문안에서는 이 각주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소송계속시점에 관한 제4조의 두문(頭文, chapeau)은 “[제2장]의 목적상”(For the purpose of [Chapter II])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제3장에도 해당될 것이다. 즉, 협약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총칙규정일 것이다.⁴⁰⁾ 이 부분을 부기한 주(註)의 서술을 받아들여, “이 협약의 목적상”(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이라고 수정할지 문제된다.

넷째, 국제이중소송의 경우, 타 체약국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진행중단”(suspend)

35)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8조 제2항 k호(“to be determined”)의 주(註). k호 전체는 꺾쇠 안에 들어 있다.

36)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8조 제2항 말미의 주(註).

37)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8조 제2항 말미의 주(註).

38)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2조 제1항 말미의 주(註).

39) 이상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2조 제1항의 맨 마지막에 꺾쇠 안에 넣어진 r호(“to be determined”)에 대한 각주.

40)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4조 말미의 주(註).

하도록 규정하는데(제5조 제1항), “각하”(dismissal)해도 되도록 수정할지 문제된다.⁴¹⁾

다섯째, 최우선관할사유 중 부동산소재지관할(제6조)이 부동산 임대차 또는 등기 사건(제8조 제2항 e호)에도 미치도록 확대할지가 미결 논점으로 남아 있다.⁴²⁾

여섯째, 부동산소재지관할(제6조)이 부동산 임대차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소재지국 아닌 국가에 상거소를 둔 경우는 예외로 할지도 미결 논점이다.⁴³⁾

일곱째,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은 비전속적 관할합의지에 소송계속되면 그 나라의 관할이 우선하도록 규정한다(제7조 제1항). 그러나 이렇게 복종의 원리에 의하여 전속관할을 다투게 되는 영미식의 비전속적 관할합의만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비전속적 관할합의⁴⁴⁾와, 영국식 소송절차상 일정 단계에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이의를 포기하는(waivers of objections to jurisdiction)⁴⁵⁾도 있다. 후자의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소화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제7조에서 다룰 수도 있고, 보다 적절한 법정지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 다룰 수도 있다.⁴⁶⁾

여덟째, 비전속적 관할합의지에 소송계속된 경우(제7조 제1항)와 명시적 동의관할(제7조 제3항)의 관계도 더 논의되어야 한다.⁴⁷⁾

아홉째, 동의를 시한(timeframe)을 두어야 할지도 미결 논점으로 남아 있다.⁴⁸⁾

열째, 보다 적절한 법정지 판별을 위한 신청의 방식(form of applications)을 정할지, 그리고 양국에서의 판단순서를 정할지도 더 논의되어야 한다.⁴⁹⁾

열하나째, 관련소송 병행에 관한 조문체계가 과잉관할을 두둔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염

41)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5조 말미의 주(註).

42)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6조 말미의 주(註).

43)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6조 말미의 주(註).

44) 한국의 지적.

45) 싱가포르의 지적.

46) 이상 제7조 말미의 주(註).

47) 제7조 말미의 주(註).

48) 제7조 말미의 주(註).

49) 제3장 제11조(보다 적절한 법정지의 결정) 제1항 말미의 주(註).

려가 제기되었는바, 보다 나은 법정지를 탐색하는 현 조문안만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게 충분한지도 좀 더 논의되어야 한다.⁵⁰⁾

열두째, 제3장(관련소송) 내에서 소송 속행(continuation)을 다루는 제14조는 아직 불완전하다. 특히, 관련소송이 계속된 타 계약국을 우선시켜 소송진행을 중단했던 법원은, 그 타 계약국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소송을 속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도 규정해야 할지 향후 논의되어야 한다.⁵¹⁾

열셋째, 제3장(관련소송)은 관련소송 중 하나가 부동산물권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따로 다루지 않는다. 이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도 향후 논의되어야 한다.⁵²⁾

열넷째, 연락장치(Communication mechanism)(제16조)와 공동변론기일(Joint hearings)(제17조)에 관한 각 조문에 대한 부적용선언 가능성도 더 논의되어야 한다.⁵³⁾

다. 공공자문서 안(조문안 해설 포함)의 검토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총장의 강한 주장으로, 법률실무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자문(公共諮問, Public Consultation)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므로, 자문서(諮問書, 의견조회서, Consultation Paper) 안을 검토하고 다듬는 작업도 예정되어 있다. 자문서(안)에는 간략한 조문안 해설(“해설주해”)도 포함되어 있는데, 작업반 초안의 개요를 평이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질문들은 조문안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제적 효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묻는 것이다. 조문안 해설과 질문의 세부적 표현을 두고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견조회와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50) 제3장 제11조(보다 적절한 법정지의 결정) 제2항 말미의 주(註).

51)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14조 말미의 주(註).

52)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14조 말미의 주(註).

53) 작업반 8차 회의 후 조문안, 제16조 및 제17조 말미의 주(註).

III. 작업반 9차 회의 논의 경과⁵⁴⁾

작업반 9차 회의를 위하여 약간의 문서들이 제출되었다. 작업반에 참여 중인 회원이 작업문서(Working Documents), 정보·논의문서(Information and Discussion Paper)를 제출했다. 작업문서 중 일부는 회의 중에 제출되었다. 한편, 상설사무국은 조문안 자구수정 제안 문서와 공공자문서 초안을 마련했다. 그 문서들은 9차 회의 논의의 기초가 되었다.

1. 정보·논의문서(Information and Discussion Paper)의 검토

가. 정보·논의문서의 요지

싱가포르의 정보·논의문서(Information Document and Discussion Paper)⁵⁵⁾는 정보문서적 부분과 논의문서(論議文書)적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자에서는 싱가포르의 국제민사소송 판례를 들면서, 그 대상사안들이나 이를 조금 응용한 설례에서 국제중복소송 상황의 유형을 간취한다. 후자에서는 현 조문안이 그 그런 국제중복소송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충분한지, 아니면 제8조 제2항에 추가적 조문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싱가포르가 제8조 제2항의 증보를 위하여 제출한 작업문서로 제시되었다.

참관기관(observer)으로서 참석을 허락받은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도 정보·논의문서(Information and Discussion Paper)를 제출했다. 이 문서도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4개국 판례로부터 귀납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했다. 위 4개국의 판례 원문을 국가별로 묶은 부록도 함께 제출했다. 8차 회의 후 조문안이 충분한 법제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는 데 참고될 자료 제출의 취지로 보인다. 8차 회의 후 조문안을 출

54) Chair of the Working Group, Working Group on Jurisdiction: Report of the Ninth Meeting, October 2025 (이하 “작업반 9차 회의 의장 보고서”로 약칭)는 제4일 저녁에 초고가 배부되고 제5일(최종일)에 작업반 내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되었다. 보고서 안의 Micro Word 파일을 화면에 띄워 놓고 직접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그런 수정·보완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상설사무국의 윤문까지 거친 ‘작업반 9차 회의 의장 보고서’는 아직까지 작업반에 제공된 바 없다. 이 보고서의 초안을 인용하기도 부적당하므로, IV 및 V에서는 9차 회의 논의경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 초안을 참고만 할 뿐, 인용 표시는 하지 않는다.

55) 정보문서(Information Document)는 그렇게 문서명세를 붙이고, 제출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실무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제목에는 논의문서(Discussion Paper)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서 그런지, 문서번호 없는 참고문서로 분류되었다.

발점으로 하여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 맹점이 있는지를, 그 많은 자료로부터 추출하여 강조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석과 대안 제시를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IBA가 말하려는 논지는, ‘작업반은 이런 살아 있는 자료를 읽지 않고 조문안을 다듬고 있나본데, 자료를 제공할테니 공부하고 분석해 보아라’고 시키는 셈이 된다. 혹은 ‘우리는 이렇게 변수가 많은 판례 속에서 송무(訟務)에 종사하기를 선호한다’고 내세우면서, ‘당신들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허탈할 정도로 간단해 보이는 협약 따위는 하찮아 보이며 호용도 없을 것이다’고 예언적으로 폄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바깥 세상에 이렇게 방대한 판례가 있는 것도 무시하면서 탁상공론으로 그런 짤막한 조문안이나 만들고 있느냐’고 막연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다. 요컨대 문서가 방대하고 방만할 뿐, 논지에 초점이 없었다. 그만큼 호소력도 떨어졌다.

나. 작업반 9차 회의에서의 논의

싱가포르와 IBA가 각기 정보·논의문서를 제출했다. 회원이 참관자에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취지 설명의 기회를 싱가포르에게 먼저 부여했다.

논의의 비중도 싱가포르 제출 문서에 두어졌다.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싱가포르는 작업반 내 교섭국으로서 협약의 취지를 훨씬 잘 이해하고 있고, 타 회원들과 조율하여 작업문서를 제출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 정보·논의문서의 내용이 9차 회의에 제출한 조문안(작업문서)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정보·논의문서는 제8조 제2항의 수정보완이라는 9차 회의 중점 안건과 긴밀히 관련되는 것이었다. 제1항의 고려요소 목록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제2항에서는 중복소송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IBA는 선소(先訴)를 파악하고 협약에 따른 우열 판단을 하려면 사건 관련 정보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정보가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IBA의 의견은 소송비용 증가에 아랑곳 않는 송무변호사적 시각과, 소송이 실생활보다 큰 중대사가 되는 일을 예삿일로 여기는 미국 소송문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보·논의문서 자체에 대한미국은 피고 개인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2.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제8조 제2항)의 약간의 증보

가. 2019년 재판협약 제5조 제1항보다 넓힐 가능성과 필요성

제8조 제2항의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을 2019년 재판협약 제5조 제1항의 관할사유 목록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작업반에서 때때로 개진되어 왔다. 두 목록은 규율목적에 달리하므로, 굳이 두 목록을 엄격히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7차 회의(일본)에서 스위스가 자국의 국제적 중복소송과 관련소송 현황을 정리한 정보문서 제2호를 설명하면서, 제8조 제2항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특히 큰 예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관할을 들었다.⁵⁶⁾ 이를 계기로, 제8조 제2항의 목록을 증보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7차와 8차 회의를 거치면서, 재판협약 제5조 제1항의 관할사유 목록과 달리 이번 협약 제8조 제2항의 관할사유 목록은 중요한 관할사유들을 골고루 빠짐없이 수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전제로, 9차 회의에서는 어떤 우선적 관할사유들이 제8조 제2항에 포함될 만한지 논의했다. 이 안건도 조문안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작업반 구성원이 조문안을 담은 작업문서를 제출한 한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안자가 제안취지를 설명한 뒤, 해명적 질문(clarifying questions)을 받고 이에 답한 후, 정책적 논의와 조문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나. 미국의 증보안에 대한 논의

(1) 미국의 당초 제안(작업문서 제57호)과 그에 대한 논의

Article 8

2.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has jurisdiction / connection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 met -

[...]

(g) a claim concerns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from death, physical injury, damage to or loss **or loss of value**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and -

(i) the act or omission directly causing such harm occurred in that State, irrespective of where

56) “Information Document and Discussion Paper Submitted by Switzerland”, Info Doc No 2 (22 October 2024), p. 5.

that harm occurred; or

(ii) the harm was suffered in that State as the result of conduct specifically directed toward that State; or

(iii) the claim arises out of goods,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placed into or directed at the market of that State, where the defendant purposefully engaged with that market and the claim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ose activities;

[...]

(l) the proceedings are *in rem* and concern rights in movable property located in that State;

(m) jurisdiction is otherwise authorized under a statute of that State providing for jurisdiction in matters with a substantial connection to that forum; [in the case of a federal or non-unitary State, this provision applies only to statutes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authority;]

(n) the defendant has consen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whether expressly (for example by agreement or designation of a forum) or impliedly (for example by registration to do business or by appointment of an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제8조 제2항 목록을 증보하는 위 조문안들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위시하여 미국의 현재 통설·판례상 중요한 관할사유를 우선적 관할사유 목록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가) 불법행위지관할의 대상인 불법행위의 포섭범위 확대 제안

g호 두문에서 “가치 상실”을 언급을 추가하려는 것은 무형적 손해도 포섭하려는 취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표명이 없었다. 그래서 조문안에 반영되었다.

g호 두문에서 “무체”재산 언급 추가를 제안하는 것은, 무체 재산이라 하여 불법행위지 관할의 중요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 표명이 없었다. 그래서 조문안에 반영되었다.

g호 (ii)과 (iii)은 결과발생지관할의 제한적 추가안이다. 불법행위지 특별관할로 행동지 관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결과발생지관할도 일정 한도 내에서 규정하자는 제안이다.

(나) 결과발생지관할의 추가 제안

g호 (ii)는 “지향된” 결과발생지관할 규정이다. 결과발생지를 지향한 바로 그 행동(거동)에서 발생한 결과일 것을 요구하므로, 특별관할의 상궤에도 맞는다. 다만 아직 충분히 논

의할 시간은 없었고, 의견합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꺾쇠 안에 넣어 작업반 조문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의 후속 작업문서 제60호에서는 (ii)와 (iii)의 수정안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는 제안을 했지만, 결국 작업반 제57호처럼 다시 두 부분을 나눈 형태로 작업반 조문안에 들어갔다.

g호 (iii)은 제조물책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제조물책임에 대한 국제·주제재판관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인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⁵⁷⁾ 판결을 정식화한 것이다. 미국 대표단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iii)의 전반부, 즉 주절(主節)에서는, “물품, 역무, 또는 기타의 활동”을 결과발생지 시장에 이르는 유통흐름 속에 “놓”거나 그 시장을 “지향”한 경우에 결과발생지관할이라고 규정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ii)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지향”된 결과발생지 관할을 규정한 부분은 아예 (ii)와 중복된다. 한편, (iii)의 후반부, 즉 종속절(where 이하)을 보면, “목적적” “관여”라는 기준을 규정하여 결과발생지관할을 재차 한정하려 한다.

그런데 문제된 활동과 청구권기초와의 관계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조금 달리 규정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청구권기초가 된 불법행위가 바로 그런 영토적 접촉을 가진 활동에서 발생해야 한다(“the claim arises out of”)고 규정한다. 이 점은 (ii)도 마찬가지여서, “the harm was suffered ... as the result of conduct”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iii)의 후반부(where 절)는 이와 달리, “the claim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ose activities”라고 규정하여, 일관성이 깨어지고 있다. 한국(본 보고자)은 이 점에 의문을 표하면서, (ii)와 (iii)이 왜 따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일관된 내용으로 합쳐질 수는 없을지 질문했다. 결국 미국은 작업문서 제60호에서 (ii)와 (iii)을 합쳐서 규정했고, 두 부분 간의 일관성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작업문서 제60호에서 제안된 이 조문안을 작업반 조문안에 넣을 때에는, 다시 (ii)와 (iii)을 나누었다. 이 조문안들이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어 규정하는 편이 논의하기 더 편할 것이다. 이런 점이 고려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ii)와 (iii)를 함께 꺾쇠 안에 넣어, 이 두 가지의 결과발생지관할이 함께 논의될 여지를 남겼다.

g호 ‘목적적으로 물품이나 역무를 유통의 흐름에 놓음에 따른 결과발생지관할’과 ‘지향

57) 564 U.S. 873 (2011).

된 결과발생지관할'을 묶어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조문안의 취지가 복잡하여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고, 규정취지를 좀 더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다) 동산물권에 대한 대물소송에 대한 동산소재지관할 추가 제안

1호는 동산물권에 대한 대물소송에서의 동산소재지관할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있었고, 1호는 그 논의를 반영하여 약간 손질된 형태로 조문안에 넣어졌다. 성질결정(characterization) 문제가 까다롭다는 점에 주로 유념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유체동산의 예로 무엇이 있을지도 논의되었다. 인적 재산(chattels), 선박(ships), 문화재(cultural property), 미술품(art objects) 등이 언급되었다. 브라질은 유체동산 중 이동장비는 사법통일국제협회(私法統一國際協會, UNIDROIT⁵⁸) 조약인 케이프타운협약⁵⁹이 이미 규율하므로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대상 재산이 무체재산(intangible property)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임을 밝혔다. 그래서 무체재산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유체동산에 국한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되었다. 유럽연합은 무체재산도 다루는 규정이 있으면 법적 확실성이 높아져 유익하다고 발언했다.

셋째, 모든 무체동산이 1호의 적용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무체동산으로서 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조심스럽게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논의는 브라질이 주도했고, 의장도 공감했다.

브라질은 무체재산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나서는 곤란하다는 염려를 표명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대인적 권리(in personam right)로 분류하고 어디까지를 대물적 권리로 분류할지를 생각해야 하고, 이 호(號)는 무체재산 중 후자에만 적용되어야 적절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이다.

의장도 무체재산의 구체적 범위는 더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무체재산

5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59) '이동장비에 대한 국제적 이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2001).

의 예로 암호화폐, 디지털재산, 은행계좌도 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지의 논의가 앞으로의 교섭 과제가 될 것이며, 이런 논의를 위한 준거점으로서 1호를 제8조 제2항에 추가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도 브라질과 의장에 대하여 다음 취지의 지지발언을 했다. 브라질의 지적과 의장의 언급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산의 범위는 준물권 개념에 힘입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체재산 중에도 포함될 것이 있겠지만,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이 맥락에서 말하는 무체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일이다. 즉,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지이다. 국내법의 맥락에서는 동산물권 개념의 외연을 설정하는 성질결정 문제의 중요성은 별로 의식되지 않지만, 국제사법에서는 중요성을 가진다. 심지어 채권도 동산의 일종으로 정의하는 민법전 입법례가 있다(예: 프랑스⁶⁰). 준물권 개념에 기대어 무체동산 개념을 넓히다 보면 심지어 채권까지 포함될 것이다. 채권침해지의 하위개념으로서 결과발생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도 하고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렇게까지 견해도 갈리고 까다로울 해석 문제를 남기면서 조문을 외관상으로만 통일한들 별로 유익하지 않다.

나아가 한국은 다음의 이유도 들어, 무체재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좁히는 접근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1호에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여 무체동산을 아예 (I)에서 제외하거나, 무체동산을 좁게 정의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무체동산 침해는 불법행위로 성질 결정될 것이고, g호에 의하여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무체동산의 외연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가벼운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이 아닌 것은 모두 동산이니, 동산의 개념 정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무체동산의 개념은 개념정의하기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미국의 조문안이 염두에 두고 있고 적용되기에 알맞는 무체동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할지 문제된다. 이것은 까다로운 정책 문제이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입법적 접근이 왕성한 듯한데, 이번 협약 교섭에 참여하는 대표단도 앞으로는 이 점을 숙지하고 문제의식을 갖

60) 프랑스라고 특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추어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물소송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질문과 논란이 이어졌다. 이 논의를 통하여, “대물” 소송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문구를 더 다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단순히 대물소송이라는 이유로 동산소재지관할을 규정하자는 취지는 아님이, 질의응답을 통하여 밝혀졌다. 제안취지를 살리려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가 청구의 목적(object)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려면 해당 동산‘에 대한’ 소송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넣거나, 다른 적절한 문구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상의 발언들을 경청한 뒤, 커피 브레이크 중에 조문안을 수정하여 제시했다.

[(l) the proceedings [are in rem and concern] [have as their object] ownership or possession of rights in [tangible] movable property located in that State [at the time the court was seised];]

이 수정안은 까다로운 논점이 연루되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조문안에 표시한 것이다. 첫째, 보수적 접근을 하여 “유체”동산에 한정할지, 아니면 무체동산도 포함할지의 문제를 열어 놓았다(“[tangible] movable proerty”). 둘째, 소유권이나 점유가 청구의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만 “에 관한”(concern) 소송이라고 규정할지, “을 목적으로 하는”(have as their object) 소송이라고 규정할지의 문제는 열어 두었다. 즉, 두 문구안을 모두 껍쇠에 넣어 병치했다. 셋째, “in rem”의 문구를 껍쇠에 넣어 두고, 대륙법계에 낯선 “대물”소송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환영받았다. 그대로 조문안에 수용하여 제8조 제2항에 k호를 추가하여 두 되, k호 전체에 껍쇠를 두르고, k호 내의 미결 논점 부분도 껍쇠 안에 넣었다. 다만 호(號)의 번호는 k호가 되었다.

[(k) the proceedings [are in rem and concern] [have as their object] ownership or possession of rights in [tangible] movable property located in that State [at the time the court was seised];]

한편, 동산은 소재지를 옮길 수 있으므로 기준지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

최윤정 판사). 이 논점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이어졌다(이탈리아의 Fausto Pocar, 브라질)(유럽연합도 동의). Pocar 교수는 소송계속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자신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문제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중요 논점에 속한다.

(라) (연방법상의 청구에 대한) 실질적 관련 관할 추가 제안

m호는 법정지와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제8조 제2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적 관할로 다루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관할사유를 구체화하지 않은 포괄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제8조 제2항의 설계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후반부는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청구의 근거규범이 연방정부의 입법관할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덧붙이는데, 그 취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먼저, 왜 그런 제한을 덧붙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 입법관할이 실제로 행사되어 연방입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구체적 사건의 청구의 근거규범이 그런 연방입법이어야 한다는 것인지⁶¹⁾도 불분명하다. 사물적 재판관할과 인적(대인적) 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의 혼동이 제안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든다.

그런데 미국의 제안취지 설명과, 위 조문안을 수정한 작업문서 제60호, 제62호, 제62호 수정본을 보면, 청구권기초가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지를 불문하는 포괄적 관할사유를 제안하는 취지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떤 사항을 다루는 특별관할인지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외곽을 때”릴⁶²⁾ 뿐이다. 핵심을 찌르지 않은 채 마치 공허한 형식만 이야기하는 외양을 취하면서, 속으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논리를 국제민사소송법에 끌고 들어오려 하니,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것이다. 실질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연방입법의 문제라고만 말한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 연방법이 나서서 다루었겠느냐’고만 말하는 셈이다. 실질의 언급을 극도로 회피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를 눈치껏 알아듣기를 기대하는 미국식 완곡어법,⁶³⁾ 내부자 집단(inner circle)끼리만 뽐치려 하는

61) 그렇다면, 연방법원의 연방문제관할(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이라는 사물적 재판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언급하는 것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지방법원이 연방문제관할을 가지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이 연방문제관할을 가지는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주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다. 연방지방법원이 주법원을 배제하고 사물적 재판관할을 독점하는 것은, 연방지방법원의 연방문제관할이 전속적 사물관할인 경우만이다.

62)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노재봉 전 총장이 다른 맥락에서 쓴 표현을 빌림.

‘언어적 또는 의사소통상의 내부자 유착주의’(linguistic or communicational cronyism)⁶⁴⁾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모 판례를 반영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해서는 곤란하니, 규정 취지를 구체화하고 적절히 한정하여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미국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작업문서 제62호(미국)에서 제안취지를 조금은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제안취지가 불분명하여, 다시 작업문서 제62호 수정본(미국)을 제출하여 ‘테러의 적용제외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게 된다. 다만 작업문서 제62호 수정본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적용제외 제안이라면 별로 논의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논의방향을 좁히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한국의 본 보고자)이 있었다. 스위스도, 미완결 논점을 주(註)에서 지적할 때, ‘적용제외 여부’의 논점이라고 못 박지 말고, 단지 ‘테러행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하여 더 논의해야 한다고만 적어 두자고 주장했다. 향후 논의에서는 의장과 미국이 의견을 모은 적용제외안에 무게가 두어질 듯하지만, 이런 고려를 어떻게 반영할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주(註)로 부기하게 되었다.

(마) (명시적) 동의관할 추가 제안, 이에 대한 논의 및 작업반 조문안에서의 반영

n호의 앞 부분은 명시적 동의관할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예컨대 관할합의나 관할지정에 의하여” 동의한 경우를 예시한다. 또, n호의 뒷부분 중 괄호 바깥의 부분은 ‘현존하지만 명시적이지는 않은’ 동의, 즉 진정한 의미의 묵시적 동의에 근거하는 관할에 대한 언급도 포함한다. 양자를 ‘실제의 동의에 근거하는 관할’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실제의 동의에 근거하는 관할’을 제8조 제2항에 추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7조와도

63) “분명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Ce qui n’est pas clair n’est pas français.)라고 말할 정도로 취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프랑스어식 의사소통법과 대조된다. 아예 반대방향을 지향한다. 상류층 미국인의 어법은 우아하다 못해 알아듣기 어렵기까지 하다. 마치 어떻게 하면 불분명하게 말할지, 어떻게 하면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주변적 이야기를 하여 스스로의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겨듣도록 할지 궁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때문인지, 프랑스인이 프랑스어식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영어로 하면, 미국인들은 너무 직접적이고 저돌적, 도발적이며 예의가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 영어로 “프랑스어를 좀 하겠다”는 말은, ‘한 번 속 시원하게 욕설을 내뱉어야겠으니 참고 들어 달라’는 뜻이라고 한다. 점잖은 사람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남에 대하여 욕설을 내뱉고 싶을 때, 이렇게 양해를 구한 뒤 욕설을 실컷 퍼붓는다고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연설하면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프랑스어식 어법으로 발언했다가,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된 일도 있었다. 영어권 언론들은, 마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선 것처럼 보도했다.

64) 영미권 학자들이 한국의 결속력 강한 시장경제를 비아냥거릴 때 쓰는 “crony capitalism”이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본 보고자가 문맥에 맞게 만든 표현이다.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는 ‘명시적’ 동의관할을 중심으로 했다. 상충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표명되었다. 논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논점은 이번 협약이 명시적 동의관할을 다루기에 적절한 곳인 지이다. 동의관할은 2005년 관할합의협약에서 다룬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전속적 관할합의와 관할에 대한 동의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양자는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동의관할은 이번 협약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반론으로, 관할합의협약 비체약국에 중복소송이 계속(繫屬)된 경우도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 국가가 모두 관할합의의 체약국이라면 관할합의협약(제6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겠지만, 응소관할이 성립한 나라가 관할합의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번 협약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논점은 전속적 관할합의를 이번 협약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기를 거절하는 제7조 제2항이 타당한지이다. 먼저, 관할합의협약의 규율대상이며 제7조 제2항이 적용제외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의 전속적 관할합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중 관할합의협약의 규율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7조의 수준에서 최우선적 관할로 다루든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제8조 제2항에서 다루든지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두 규율방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보다 적절한 법원(법정)’ 분석에서라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관할합의협약이 말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라 하더라도, 관할합의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채로 이번 협약의 체약국이 된 나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7조 제2항이 전속적 관할합의를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방안만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표명되었다.

셋째 논점은 “순수하게 관할부여적”인 비전속적 관할합의를 어떻게 다룰지이다. 이것이 관할사유로서 가지는 무게에 대한 논의가, 위 n호 신설안을 계기로 다시 이루어졌다. 이런 비전속적 관할합의는 제7조의 최우선적 관할사유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기는 하다(아직 조문안으로 형상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런 비전속적 관할법원에 제소된 후, 피고가 그 법원에 명시적 동의하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내에서 (미국이 제안하는) n호를 적용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의장). 이 점에 착안하여, “순수하게 관할부여적”인 비전속적 관할합의

는 아예 제8조 제2항의 수준에서 동의관할로만 다루어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표명되었다. 반면에, “순수하게 관할부여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전속적 관할합의는 일률적으로 제7조의 수준에서(제7조 제3항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넷째 논점은 명시적 동의관할의 무게가 제7조 제3항으로 규정하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이다. 명시적 동의관할은 제7조 제3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3항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반대 견해도 있었다. 즉, 당사자자치에 근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7조의 수준으로 높일 것이 아니라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논점은 명시적 동의관할이 합의관할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명시적 동의관할을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더라도 그 관할사유가 인정되는 한 제7조의 관할은 복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다. 특히, 전속적 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제소되었고 그 나라가 명시적 동의관할을 가지는 경우가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관할근거로서 합의와 동의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관할합의 형태의 당사자자치를 동의관할의 논리로써 너무 쉽게 깨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그것이다(싱가포르).

여섯째 논점은 응소관할과의 관계이다. 전속적 관할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법정지 아닌 나라에서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고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다툼 없이 응소하면, 응소관할이 성립할 것이다. 그리고 응소관할은 우선적 관할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제8조 제2항 j호). 이렇게 전속적 관할합의에 내포된 관할배제합의가 적시에 원용되지 않아 이를 무력화하는 응소관할이 성립한 이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응소관할보다 범주적으로 우선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명시적 동의관할을 제8조 제2항에 추가하자는 제안을 계기로 터져 나온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까다롭고 복잡하다. 작업반에서 매듭짓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문안으로 형상화하기도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논점의 일부만이라도 우선 주(註)에 적어 두기로 했다.

그런데 작업반 조문안 제7조 말미의 첫 번째 주(註)는, “순수하게 관할부여적인 효력[만]

을 가지는 비전속적 관할합의”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이의의 포기”에 대한 미결 논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즉, 양자를 제7조의 수준(제7조 제3항)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보다 적절한 법원(법정)’ 분석에서 고려요소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 옳은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두 해법 사이에서 중간적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도 문맥에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주(註)에 다음의 문구를 추가하여 두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순수하게 관할 부여적인 효력[만]을 가지는 비전속적 관할합의”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이의의 포기”에 대하여, 제7조에서 다루는 방안과, ‘보다 적절한 법원(법정)’을 결정하기 위한 비교형량 차원에서 다루는 방안 외에, 제8조 제2항에서 다루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언급을 추가했다. 둘째, 전속적 관할합의 중에서 2005년 관할합의협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느슨하게 “*express jurisdiction agreements*”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제7조, 제8조 제2항, ‘보다 적절한 법원(법정)’ 분석의 셋 중 어느 수준에서 규율할지 더 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물론 이 문구들만으로는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위 논점들과 견해들의 논의 여지를 모두 포착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더 논의해야 할 논점들을 전부 다 적어두기도 어려우므로, 이 정도에 머무르기로 한다는 데 묵시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Note: Possible need to address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non-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with purely prorogatory effect, and waivers of objections to jurisdiction, either in this Article, **in Article 8(2)**, or in the rules on the more appropriate court analysis.]

(바) 사업활동을 위한 등록국 관할과 송달수령인 지정에 의한 관할 추가 제안

‘묵시적 동의에 근거하는 관할’(n호의 뒷부분)의 첫 번째 예시는 등록국관할이다. 즉, 외국인이 내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한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우선적 관할사유로 규정하는 제안이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무조건 아무 예외의 여지도 없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 동의’, 즉 일반관할을 근거지우는 동의를 한 것으로 법률상 당연히 의제(擬制)된다는 것이다. 즉 ‘의제된 동의관할적 일반관할’을 규정하자는 것이다.

‘묵시적 동의에 근거하는 관할’에 대한 두 번째 예시는 (내국송달을 위한 내국 내) 송달수령인 지정을 이유로 하는 관할이다. 환언하면, ‘피고가 지정한 송달수령인에 대한 현존

관할(송달관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할을 행사하여 확립(establish)시키려면 결국 그렇게 송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mplied”(묵시적 또는 간주된) 동의에 의한 관할과 그 예시로서의 사업등록지관할에 대해서는 특별관할로 규정된다면 받아들일 만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즉, 외국인 사업자가 내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서 등록한 것을 두고, 내국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볼 여지도 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반대의견들도 개진되었다.

유럽연합은 사업등록이 충분한 관할근거가 되는지, 나아가 우선적 관할사유가 될 만한지에 대하여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국(본 보고자)은 “간주된” 동의관할 부분에 대하여 다음 이유로 반대했다. 영어로 “implied”는 애매한 용어이다. 당사자의사의 해명적 해석을 가리키기도 하고, 법원이 부과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별로 의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문제이다. 물론 법원이 부과할 때가 문제이다. 그것은 “묵시적” 동의 관할이라고 부르지만, 의제된 동의 관할의 본질을 가진다. 더구나 미국은 일반관할의 본질을 가지는, ‘간주된 동의’관할은 우선적 관할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간주된 동의’ 관할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Mallory v. Norfolk Railway Co.*⁶⁵⁾ 판결 다수의견을 본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Gorsuch*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사회계약이론을 원용한, 새롭고 돌출적인 이론으로서 낯설다. 이 법리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협약상의 ‘우선적’ 관할사유로 규정하기는 더욱 근거가 약하다.

한국(본 보고자)은 실제의 “묵시적” 동의를 이유로 하는 관할에도 다음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미국 대표단의 제안취지 설명에서는 관할합의협약과의 일관성을 언급했는데, 솔직히 반대로 생각한다. 관할합의협약도, 브뤼셀 제1규정도, 뉴욕협약도, 서면 요건을 요구한다.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아예 쌍방이 서명했어야 한다. 독일도, 제가 알기로는, 상인 사이에도 서면요건을 요구하는 이런 협약들에 순순히 따랐다. 국제협약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브라질도 한국을 지지하면서,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를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보태었다. 명시적 동의를 이유로 하는 관할은 전속적 관할합의, 비전속적 관할합의와

65) 600 U.S. 122 (2023).

함께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묵시적 동의를 이유로 하는 관할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양자를 묶어 다룰 것이 아나라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묵시적 동의’관할 대신 응소관할로 다루면 충분하므로 ‘묵시적 동의’관할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중국).

캐나다도 ‘묵시적 동의’관할에 대한 염려에 공감을 표했다.

싱가포르의 관할합의 형태의 당사자자치가 유효하게 행해졌는지 판단할 때 법원이 공을 들이는데 그것이 동의관할의 논리로 쉽게 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최윤정 판사도 ‘소제기 후의 동의’도 동의관할을 근거지우는 것이라면 선행 합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래서 동의관할 중에는 ‘명시적 동의’관할만 남기는 방안을 지지했다.

의장도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를 따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미국이 묵시적 동의, 영업등록, 송달수령 대리인 지정을 관할근거로 들고자 할 때, 그 제안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문언을 다듬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결과발생지관할과 등록지관할에 관한 미국의 절충안(작업문서 제60호)과 조문안의 반영

미국의 작업문서 제60호는 작업문서 제57호에 대한 반론을 고려한 절충적 조문안을 담고 있다.⁶⁶⁾

(g) [...]

(i) the act or omission directly causing such harm occurred in that State, irrespective of where that harm occurred; or

(ii) The harm w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defendant purposefully placing goods or services into, or directing activities at, the market of that State, and the claim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ose activities.

66) 작업문서 제60호는 작업문서 제57호를 수정한 절충안으로서, 조문의 앞뒤 문맥을 생략하고 해당 조문안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조문안을 그대로 인용하되, 앞뒤의 문맥을 함께 표기했다.

- (c) the defendant maintained a branch, agency, or other establishment without separate legal personality in that State, or registered to do business in that state, at the time that person became party to the proceedings in that State, and the claim arose out of the activities of that branch, agency, or establishment or the matters covered in that registration;

g호 (ii)의 조문안은 작업문서 제57호(미국)에서 제8조 제2항 g호 (iii)으로 제안했던 조문안을 축약하고 다듬은 것이다. 작업문서 제57호와 달리, 두 가지 결과발생지관할, 즉 “목적적으로” 결과발생지의 “시장”을 향하여 “물품이나 역무를 놓”은 경우의 결과발생지관할과, “지향”된 결과발생지 관할을 한 문장에 묶어 차례로 규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ii)의 후반부(“and the claim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ose activities”)는 작업문서 제57호에 “relates to”가 섞여 있는 데 대한 한국의 비판을 고려하는 대신, 오히려 역행하여, “relates to” 기준을 “지향”된 결과발생지관할에 대해서까지 확대시켰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발생지관할 모두 완화되고 말았다.

c호의 수정조문안은 작업문서 제57호에서 명시적 동의관할을 향후 논의과제로 돌리고, “묵시적 또는 간주된”(implied) 동의관할을 삭제하고, 사업등록지관할만 남긴 것이다. 제안 내용을 보면, 내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한 등록지에 ‘등록된 사업 범위 내’로 범위가 한정된 일반관할을 인정하려는 안이다. 작업문서 제57조에서 제안한 ‘무제한적 등록지관할’보다는 물려선 것이지만, 여기에 담긴 절충은 충분치 않다. ‘등록된 사업 범위 내’로 사항적 범위가 한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지점 없이 등록만 했더라도 지점을 둔 경우에 기능적으로 대응되는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에서 소송원인이 발생했으면 등록된 활동지에 특별관할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된 사무소·영업소 특별관할이나 활동지 특별관할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오히려 ‘사항적으로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관할의 본질을 가진다. 유럽연합은 c호의 이 수정조문안에 대해서도 유보적 의견을 밝혔다. 사업등록지관할 안에 대해서는 염려가 남았고, 특별관할 형태의 등록지관할에 대하여 우선적 관할의 지위를 인정할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작업문서 제62호에도 불구하고, 두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그 두 관할사유는, 비중 있는 회원국인 미국의 국제·주제재판관할법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미국은 이 두 관할사유를 중요하게 여겨 조문안을 제출했으며, 타 회원

들이 관심을 표하면서 비판적 의견을 밝혔고, 미국이 그 의견들을 반영하여 절충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 조문안들은 어느 정도의 지지는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적절히 수정 보완함으로써 충분한 지지를 얻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두 부분을 다루는 조문안은, 그 내용의 전체에 대하여 꺾쇠를 둘러, 작업반 초안에 넣게 되었다.

결과발생지관할 조문안을 작업반 초안에 넣을 때에는, 작업문서 제57호처럼 (ii) 지향지 관할과 (iii) “목적적”으로 물품, 역무, 기타 활동을 유통의 흐름에 놓은 데 따른 결과발생지관할로 나누고, “relates to” 기준은 (iii)에만 들어가는 형태로 되돌아갔다. 아직 충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므로, (ii)와 (iii)을 묶어 꺾쇠로 에워싼 형태로 작업반 초안에 들어갔다. 다만, 작업반 초안에서 (ii)와 (iii)을 나누어 규정하여 둔 것은, 둘을 나누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가 아니다. 오히려 (ii)와 (iii)을 함께 꺾쇠로 묶음으로써, 둘을 나누어 규정할지, 아니면 합쳐서 규정할지에 관하여 더 논의할 여지가 남아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c호의 수정안 작업문서 제60호에 담긴 추가 문구들을 꺾쇠 안에 넣은 채로 작업반 초안에 넣게 되었다.

작업반 초안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c) the defendant maintained a branch, agency, or other establishment without separate legal personality in that State[, or registered to do business in that state,] at the time that person became party to the proceedings in that State, and the claim arose out of the activities of that branch, agency, or establishment[or the matters covered in that registration];

(g) [...]

(i) [...]; [or

(ii) the harm was suffered in that State as the result of conduct specifically directed toward that State; or

(iii) the claim arises out of goods,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placed into or directed at the market of that State, where the defendant purposefully engaged with that market and the claim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ose activities;]

(3) 미국의 테러행위 관련 절충안(작업문서 제62호, 제62호 수정본)과 주(註)의 추가 미국은 작업문서 제57호에서 제안했던 제8조 제2항 1호(실질적 관련)의 수정본으로 작

업문서 제62호를 제출했다. 타 회원들의 의문제기와 비판을 수용하기 위하여 내부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다.

(g) [...]

[...]

(iv) the claim is for harm or loss in matters closely connected to that State and implicating important foreign policy concerns for that State;

작업문서 제62호는 조문안을 불법행위 사건의 특별관할을 규정한 g호 내로 옮기고, 결과발생지관할의 일종으로 위치 지워, (iv)로 규정하려 한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운 진전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문안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외교정책”이 연루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관할 이라고 할 뿐이다. 이것도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외교적이다. 전략적 모호성의 극 치이다. 그래서 이 조문안도 지지받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재차 내부 협의를 거쳐, 작업문서 제62호 수정안(미국)을 제출했다. 제2 조(범위로부터의 제외)의 말미에 주(註)를 추가하여, 테러행위를 어떻게 다룰지 더 논의를 요한다는 점을 부기해 두자는 제안이다. 제안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Note: Matters involving claims for victims of terrorism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작업문서 제62호 수정안은, 더 논의해야 할 해결방안이 ‘적용제외’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주(註)의 위치로 볼 때 그런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미국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조금은 구체화되었다. 테러행위를 이유로 하는 피해자의 소송에서, 결과발생지관할의 중요성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취지의 불명확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이 결과발생지로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겠다’는 취지인가? 아니면 ‘원고가 결과발생지를 제쳐두고 굳이 다른 우선적 관할사유(예컨대 피고 상거소)에 근거하여 미국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미국이 스스로 재판하기보다 결과발생지 법원에 양보하기를 선호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가? 혹은 양자 모두인가?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남아 있다.

아무튼, 미국의 수정제안은 테러행위의 경우 결과발생지관할을 우선적 관할의 하나로 규정하여, 테러행위의 결과발생지가 테러행위에 대한 재판을 하기 어려워지지 않게끔, 테러의 결과발생지 법원의 운신의 폭을 충분히 열어두려는 취지였다. 이런 수정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미국의 진정한 염려가 무엇인지 분명히 조문안 형태로 정리해 주어 감사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테러의 결과발생지관할이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작업반 내의 넓은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의장이 미국과 어떻게 장외 소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지점에서 미국의 입장과 발언취지를 조금 달리 이해하거나, 미국의 염려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앞서간 것 같다. 의장은, 미국 입장에서 테러를 아예 제2조의 적용제외 목록에 넣어 적용제외하면 더욱 명쾌하고 간결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적용제외 방안에 대하여 미국의 의견을 물었고, 미국은 그것도 무방하겠으며, 아예 골치아프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겠다는 식으로 답했다. 미국의 입장은 적용제외를 선호하는 취지로 이해할 만했다. 그러자 의장은 적용제외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 논의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제2조 말미에 ‘테러를 적용제외할지 더 논의를 요한다’는 주(註)를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본 보고자)은 의사진행방식에 이견을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는 테러의 결과발생지관할도 우선적 관할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다룰지를 논의했고, 이렇게 해결한다면 이번 협약의 법제를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테러를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면, 이번 협약이 제공하는 투명성 있는 국제적 법제가 쓰일 수 없게 되어, 어떤 고려요소를 얼마나 중시할지에 관하여 협약을 적용한 판단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타국이 참고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 결과 사법접근(司法接近, access to justice)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등,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염려를 밝혔다. 그리고 ‘이런 해결방안은 안전으로 상정되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논의기회를 부여받은 바 없는 해결방안의 채용 여부의 논의 여지만 남기는 식으로 논의방향을 좁히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나중에 조문안을 전체적으로 손질할 때, 스위스도 대체로 한국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즉, 테러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주(註)에서, ‘테러를 적용제외 목록에 추가할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단지 ‘테러를 어떻게 다룰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추상적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했다. 여기에는 미국도 이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의 의문제기와 맥을 같이한 스위스의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결국, 조문안 제2조 말미에 아래의 주(註)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Note: Matters involving claims by or on behalf of victims of terrorism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이 주(註)는 미국의 작업문서 제62호 수정안에 “on behalf of”의 문구를 추가하고 있다. 이것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당사자소송, 부권소송(父權訴訟) 등 다양한 소송형식을 포섭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 주(註)의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 문구의 추가를 강하게 지지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그래서 이 문구도 넣게 되었다.

이 주(註)는 이런 사항을 “적용제외할지” 여부가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미결 논점을 구체화하여 언급하지는 않는다. 막연히 이런 사항이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기재할 뿐이다. 이렇게 막연히 언급하기로 한 것은 스위스의 의견이 받아들인 것이다.

나. 싱가포르가 제출한 작업문서 제59호, 제61호에 대한 논의

(1) 작업문서 제59호(싱가포르)와 이에 대한 논의

Article 8

2.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has jurisdiction / connection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 met -

[...]

(k1) a claim is for restitution, for an account or other relief against a defendant as a trustee or fiduciary, and the defendant’s alleged liability arises out of any act done, whether by the defendant or otherwise, in the State;

(k2) a claim is for an injunction to order a defendant to do or refrain from doing anything within the State;

(k3) the defendant is a necessary or proper party to a claim pending before the court of the State, which has [priority][jurisdiction][connection] under this Article; and

(k4) a claim is for a contribution or an indemnity in respect of a liability enforceable

by proceedings in the court of the State.

(가) 부당이득에 대한 행동지관할 추가 제안

k1호는 원상회복 restitution과, ‘수탁자 trustee나 수임인 fiduciary을 피고로 하는 기타의 구제방법’을 대상으로 한다(싱가포르와 의장의 공통된 이해). 후자는 내부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싱가포르). 결국, 영미법이 여러 가지 법리로 다루는 것들을 모은 것이다.

이것이 직접관할사유로서 가지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의견 표명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적 관할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게다가 조문안이 영미법계의 색채를 강하게 띠는 점을 불편해 하는 의견도 있었다. 협약은 다양한 법제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본 보고자)도 좀 더 비교법적인 용어를 써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현 조문안이 영미법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문언을 사용한 부분이, 영미법에 무지한 대륙법계 법률가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호소했다. 이 조문안이 포착하는 법률관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이 조문안을 채택하려면 아주 좁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다른 조문으로 포착되는 부분을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 원상회복 restitution은 불법행위를 다루는 g호에 의해서도 포착된다. 둘째, 보통법에 특유한 경우를 포착하기 위하여 조문안을 만들려면 아주 좁혀야 한다. 진정한 연결 real connection임을 분명히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회의적으로 될 것이다. 셋째, 결과적 신탁 resulting trust 사안도 포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륙법계는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 스코틀랜드도 결과적 신탁 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최윤정 판사도, ‘신뢰에 기초한 신탁적 위임관계’ fiduciary relationship는 계약상 법률관계에도 해당하여 중복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의장은 원상회복과 ‘수탁자나 수임을 상대로 하는 기타의 구제방법’을 구별하여 다룰 것은 어떨지 시사했다. 전반부, 즉 원상회복 부분은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g호 쪽에서 포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후반부는 관할사유의 강도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의 논의와 의장의 마무리 발언은 제안자인 싱가포르에 의하여 잘 유념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싱가포르는 k1호 신설안에서 ‘수탁자나 수입에 대한 청구’ 부분을 포기하고, 원상회복 법리를 부당이득 법리로 개칭(改稱)하면서 불법행위에 관한 g호로 합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제안은 꺾쇠 안에 넣어 조문안에 들어갔다{아래 (2)}.

(나) 금지명령에 대한 관할 추가 제안

싱가포르는 9차 회의에 제출한 정보·논의문서(위 1. 가.)에서, 금지명령을 내리기에 적절한 법원은 금지명령이라는 구제방법의 적절성에 맞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지어 피고 상거소지 관할도, 금지명령에 관해서는 그다지 우월적인 관할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려를 반영한 호(號)가 제8조 제2항에는 없으므로, 결국 금지명령을 내리기에 적합한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k2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금지명령을 내리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제8조 제2항의 우선적 관할사유를 가지도록 제안한다. k2호를 제8조 제2항에 추가하면, 그 나라가 범주적으로 밀려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지명령을 내리기에 가장 적절한 법역(法域)임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2항의 다른 우선적 관할사유들에 밀려 금지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실제적 필요성을 공감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k2호라는 해결방안을 선뜻 지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제8조 제2항의 다른 호(號)들은, 규율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일반관할을 언급하든지, 규율대상을 한정하는 특별관할을 언급하든지), 그에 해당되는 관할사유(연결점)를 분명히 규정한다. 그런데 k2호 안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k2호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금지명령을 내리기에 적절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다른 해결책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나라를 제8조 제2항의 우선적 관할국으로 평가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고려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기에 적합한 나라의 관할’을 제8조 제2항의 우

선적 관할사유로 정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다) 피고 1인에 대한 우선적 관할이 필요적 또는 적절한 공동피고에도 미치게 하는 제안

싱가포르는 9차 회의에 제출한 정보·논의문서(위 1. 가.)에서, 피고가 수인인 공동소송에서 피고별로 제8조 제2항의 우선적 관할지가 나뉘는 것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k3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공동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제8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공동피고 중 “필요적 또는 적절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우선효가 미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 제안도 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특히 미국은, 국제재판관할의 유무 뿐만 아니라 우선적 관할사유(제8조 제2항)의 판단도 피고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 제안의 바탕을 이루는 싱가포르의 고려는 앞으로도 더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결국, 추가적 논의를 거쳐,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주(註)를 제8조 제2항 말미에 추가하게 되었다(아래 (5)).

(라) 구상청구 또는 손해전보청구에 대한 관련사건관할

싱가포르는 9차 회의에 제출한 정보·논의문서(위 1. 가.)에서, 본소에 대한 관할이 제8조 제2항의 우선적 관할에 해당하면, 그 법역은 구상청구 또는 손해전보청구라는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제8조 제2항의 수준의 우선적 관할지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익을 주장한 바 있다. k4호는 제8조 제2항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공백을 메우려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본소에 대한 관할의 우선효가 그 본소에서 파생되는 구상청구 및 손해전보청구에도 미친다는 점을 규정하려 한다.

이런 해결의 실제적 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k4호가 실익을 가질 수 있는 사안유형으로, 보험 사건이 언급되었고, 이 점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유럽연합은 브뤼셀 제1규정 제8조 제2호⁶⁷⁾가 바로 이와 비슷하게 손해전보청구에 대한 관

67) “A person domiciled in a Member State may also be sued: ... (2) as a third party in an action on a warranty or guarantee or in any other third-party proceedings, in the court seised of the original proceedings, unless these were instituted solely with the object of removing him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which would

련사건관할을 직접관할로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은 k4 신설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상청구와 손해전보청구를 영미법계에 특이한 것으로 여기면서 낮설어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제8조 제2항에 적용할 만한 공통의 주요 관심사는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결국, k4호 신설안은 제8조 제2항에 들어갈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2) 작업문서 제61호(싱가포르)와 이에 대한 논의와 작업반 조문안예의 반영

싱가포르는 작업문서 제59호 중 k1호의 제안취지를 명쾌한 표현으로 압축하여 작업문서 제61호로 제출했다. 그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행동지관할을 우선적 관할사유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별개의 호로 규정하는 대신, 불법행위에 관한 g가 부당이득도 다루도록 하여 그곳에서 함께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g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행동지관할을 규정할 때, 부당이득에 대한 행동지관할도 함께 규정하자는 것이다.

(g) a claim concerns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from death, physical injury, damage to or loss or loss of value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or the receipt of a benefit** and -

(i) the act or omission directly causing such harm **or benefit, as the case may be,** occurred in that State, irrespective of where that harm occurred; ...

이 조문안은 작업문서 제59호에 담긴 k1호보다 한층 명쾌하여, 이 점에서는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우선적 관할사유의 추가가 얼마나 절실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적극적 지지를 유보하는 발언도 있었고, 조심스러운 지지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익의 취득”이라고만 표현하면 청구권기초의 성질을 이해하기가 까다롭다고 하면서, 널리 쓰이는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이라는 문구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작업반 조문안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행동지관할을 규정하는 조문안은 “부당이득”이라는 개념과 표현을 사용하도록 다듬어져 제8조 제2항 g호에 들어갔다. 추가 문구에는

be competent in his case”

전부 꺾쇠를 쳤다.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관할로서 행동지관할이 제8조 제2항의 수준의 우선적 관할로 취급되어야 하는지는 9차 회의에서 처음 논의했을 뿐이고, 의견을 모으려면 더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 (g) a claim concerns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from death, physical injury, damage to or loss or loss of value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or unjust enrichment] and -
- (i) the act or omission directly causing such harm [or enrichment] occurred in that State, irrespective of where that harm [or enrichment] occurred;

(3) 금지명령을 별개로 다루는 방안(작업문서 제59호 수정본)과 이를 언급하는 주(註)의 추가

싱가포르가 작업문서 제59호에서 제안했던 k2호 조문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싱가포르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나라에서 금지명령을 내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찾게 되었다. 특히, 금지명령 청구는 손해배상청구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등과의 관계에서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금지명령 청구소송이 관련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금지명령 청구소송은 같은 실체관계에서 나오는 다른 소송과의 사이에서 청구의 동일성도 없고 관련소송도 되지 않는다’는 해결책을 조문안 형태로 제시하려면 추가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중복소송(제3조 제1항 a호)과 관련소송(b호)의 정의규정을 다듬는 방안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안을 제시할지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런 해결책을 조문화하는 방안을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는 선에서 작업반에서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그래서 작업문서 제59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조문안이나 이에 대한 해설주해(explanatory note)에 다음의 문구를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clusion of text in the Draft Text to clarify that where a proceeding is pending in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the fact that an ancillary court order to compel or restrain the performance of any act is sought in a court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does not give rise to parallel proceedings or related ac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Draft Text.”

k2호 추가안에 대한 반대의견 중 가장 유력한 것 중 하나는, 금지명령이라는 구제방법만 특별취급하여 우선적 관할규정으로 다루는 것은 제8조 제2항의 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싱가포르를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염려가 ‘이번 협약의 국제중복소송 조율 법제 때문에, 금지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한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나라가 금지명령을 내리는 일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k2호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해결책을 다른 방향에서 찾았다. 금지명령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청구소송과 본안(주제), 즉 청구권기초를 달리할—즉 제3조 제1항 a호가 말하는 “the same subject matter”가 아닐—뿐 아니라, 제3조 제1항 b호가 정의하는 관련소송도 아닌 것으로 파악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금지명령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이 제8조 제2항 소정의 우선적 관할국에 제기되더라도, 여기에 구애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이 해결책을 조문안 형태로 제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k2호 추가를 제안했던 문제의식을 적당한 장소에 기록하여 두고, 향후 건설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위 문구의 부기 방안은 폭넓게 환영받았다. 결국 약간의 수정을 하여 제3조 말미에 주(註)로 부기하게 되었다(아래 (4)).

향후 싱가포르는 중복소송(제3조 제1항 a호)과 관련소송(b호)의 정의규정의 수정안으로 이런 취지의 조문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불법행위지관할을 규정하는 제8조 제2항 g호에 제한문구를 추가하여,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할 범역에 대한 우위를 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식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제8조 제2항 g호의 틀 내에서 ‘금지명령 청구소송에만 적용될 우선적 관할사유’를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

작업문서 제59호 수정본은 작업반에서 대체로 환영받았다. 싱가포르는 자신이 제시한 문구를 조문안(특히 제3조 말미)에 주(註)로 부기해도 되고, 해설주해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겸허하고 유연하게 제안했지만,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하여 제3조 말미에 주(註)로 부기하게 되었다. 즉, 이런 해결책을 “조문안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해설주해에서……언급하는” 해결책을 채택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어두는 주(註)가, 조문안 제3조 말미에 추가되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다(작업문서 제59호 수정본에서 바뀐 부분만 밑줄 표시).⁶⁸⁾

[Not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clusion of text in the Draft Text or referring to this in the Explanatory Note to clarify that where a proceeding is pending in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the fact that a related court order to compel or restrain the performance of any act is sought in a court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does not give rise to parallel proceedings and may not give rise to related ac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Draft Text.]

(4) 공동피고 문제에 관하여 작업문서 제59호의 k3호를 대신하는 주(註)의 추가

싱가포르가 작업문서 제59호에서 제안한 k3호는 제8조 제2항의 우선적 관할사유의 우선효를 “필요적 또는 적절한” 공동피고에까지 확장하는 취지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조문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작업문서 제59호의 k3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의견이 대립했다. 한편으로는, 국제재판관할의 유무 뿐만 아니라 우선적 관할사유(제8조 제2항)의 판단도 피고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개진되었다(미국). 다른 한편으로는, 싱가포르 제안의 바탕에 깔린 실제적 필요에 대한 고려는 추후 더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결국 이 두 측면을 함께 반영한 주(註)를 제8조 말미에 추가하게 되었다. 이 문구는 최종일(제5일) 회의 직전에 제시되었으므로, 작업문서로 제출되지는 못했지만, 작업반 조문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Note: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multiple defendants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particular, whether the priority connections should be assessed either for each claim against each defendant or for the proceedings as a whole.]

3. 조문안의 전체적 손질

가. 협약안을 가리키는 용어 통일

작업반 초안에서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때때로 “이 문서(문건)”이나 “장래의 문서(문건)”(future instrument)이라는 표현이 쓰였던 것은, 직접관할을 다루는 부분을 협약(Convention)으로 만들지 아니면 모델법 등의 연성법(軟性法, soft law)으로 만들지 미정이었기 때문이

68) 이 주(註) 전체에 처진 꺾쇠에는 특별한 뜻이 없다. 조문의 일부가 아니라 주(註)임을 표시하는 문법기호에 불과하다.

다. 그러나 작업반 초안이 직접관할은 다루지 않고 국제적 병행소송(중복소송 및 관련소송)만 다루게 됨에 따라, 장래 만들어질 국제문서(국제문건)(international instrument)는 협약(Convention)의 형식을 띠게 됨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조문안에서 때때로 쓰였던 “이 문서(문건)”(this instrument)의 표현도 모두 “이 협약”(this Convention)으로 통일했다.⁶⁹⁾

나. 제2장(국제중복소송)에서 “보다 적절한 법정(법원)”으로 용어 통일

제2장에서는 “보다 적절한”(the more appropriate) 법정과 “보다 나은”(the better) 법정 중 어느 용어를 쓸지, 또 이 앞에 “명백히”(clearly)의 형용사를 덧붙일지의 용어 선택을 미루고 있었다. 작업반 9차 회의에서는 “보다 적절한 법정(법원)”(the more appropriate court)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런 용어 통일에는 쉽게 의견이 모아졌다. 영미권이 “forum”, 대륙법계가 “court”의 용어를 선호하면서 대립해 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놀랍게 여겨졌다. 지금까지 조문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줄다리기를 하느라 용어를 가지고 “살바 싸움”을 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영미권은 영미식 불편의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내지 편의법정지(forum conveniens) 법리를 세계화하는 것이 이번 조약성안작업의 핵심이라고 여기면서, 선소우선원칙의 열등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어떻게 (불)편의법정지 법리를 백안시하면서 기능적 조약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느냐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렇게 논쟁하려면, 불편의법정지 법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논쟁하는 편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대륙법계는 이런 접근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선소우선원칙의 경직성이 가지는 단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선소우선원칙에 중요한 기능을 맡기면서도 이 원칙의 비중이 작아 보이게 하려고 묘수를 궁리하여 왔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대륙법계는 (불)편의법정지 법리가 사용하여 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어깃장을 놓았다.

둘째, 대륙법계는 “보다 적절한” 법정을 가려내어 그것을 우선시키는 판단이 예외적이고 주변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편리

69) “the present Convention”의 표현이 쓰인 것도 있었다. 작업문서에서 쓰인 표현이 조문안에 들어간 탓이었다. 상설사무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것도 “this Convention”으로 통일했다. 단순한 표현 차이이므로 이견은 없었다.

하고 자연스러운’ 법정지를 우선시키도록 하는 법제를 들여온다면, 영미법계 법원들이 (불)편의법정지 판단을 위하여 오랜 시일과 비용을 쓰는 폐해가 대륙법계 법원에도 들어 오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의성 내지 적절성의 우위가 “명백”할 때에만 (불)편의법정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국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생각을 절충시켜 조문안을 그럭저럭 갖추고 나니, ‘이번 조약들도 우리의 (불)편의법정지를 고분고분히 본받으려 해야 한다’거나, ‘(불)편의 법정지의 색깔을 그대로 들여올 수 없다’는 수사학적 다툼은 별로 효용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forum과 court의 용어 사이에서 마음을 비우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이든, ‘자신은 없지만 아마도 비교적 이렇게 보인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법원에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버팀목이다. 그러므로 법관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또 변론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법관은 어느 한 쪽으로 결론 내려야 하겠다는 확신을 형성하거나 그에 근접하는 우열판단에 이를 때까지, 변론기회를 제공하고 심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 점을 생각하면, “명백히”라는 문구를 규정할지 말지는 실제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명백히”의 문구는 표제와 원칙에 규정하느냐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성 형량 법제의 구체적 내용이다. 어느 법원이 먼저 적절성 형량을 할지, 두 법원의 판단이 상충할 때 어느 법원의 적절성 형량 판단을 우선시킬지, 적절성 형량 판단을 위한 절차와 시간을 얼마나 간명히 하면서도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할지, 어떤 고려요소를 나열할지, 그래서 적절성 형량 판단의 투명성을 얼마나 제고할지 등이다.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 의견을 모으고 절충하여 작업반 초안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지도원리를 추상적으로 요약하여 표현할 때 “명백히”의 표현을 굳이 명기할 실익이 적어졌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명백히”라는 문구를 생략하고 표현을 간명히 하는 데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다. “forum”에서 “court”로 용어 통일

관련소송의 국제적 병행을 다루는 제3장에서는 “보다 적절한 법정(지)”라고 말할 때

“court”라고 하지 않고 “forum”이라고 했다. 미국이 제3장의 조문안을 제안할 때 후자의 용어를 쓴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의미 차이가 없다는 데 의견이 대체로 모아져, 제3장에서 “forum”이라고 하던 것도 모두 “court”로 통일되었다.⁷⁰⁾

70) 그러나 forum이라는 라틴어는 영어의 court로는 표현되지 않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라틴어는 현대의 유럽어들 처럼 ‘셀 수 있는 명사’(可算名詞)를 쓸 때 단수형과 복수형을 일일이 구별하여 쓰지만, 라틴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치 현대어의 집합명사처럼, 단수형을 써서 복수형의 의미를 담는 일이 흔하다. 이 장점은 현대에도 유념되고 있다. 그래서 forum (non) conveniens 법리가 ‘소송지로서의 편의성과 적절성’을 비교할 때에는, 구체적 소송이 계속(繫屬, 계류)된 특정 법원만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원이 속한 사법질서(司法秩序) 전체를 놓고 따진다. 그래서 위 법리는 ‘(불)편의법정’ 내지 ‘(부)적절한 법정’ 법리라고 번역되지 않고, ‘(불)편의법정지’ 내지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이다. ‘(불)편의법원들’, ‘(不)便宜司法秩序’ 내지 ‘(부)적절한 법원들’, ‘(不)適切な 司法秩序’의 뜻인데, ‘법정지’라는 표현이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우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당 법역의 ‘법원들’ 전체, ‘司法秩序’ 전체를 놓고 편의성 내지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은 실제로도 중요하다. 특히 다음 두 경우에 그렇다. 첫째, 비교대상인 양 법역 중 한 나라에는 아직 소송계속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국제적 소송병행 없는 상황에서 forum conveniens 또는 forum non conveniens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둘째, 관련소송이 복수의 법역에 나뉘어 병행된 상황에서, 그 중 한 법역에서는 관련소송들이 복수의 법원들에 나뉘어 계속(繫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협약은 전자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장에서 관련소송의 국제적 병행을 다룬다. 더 구체적으로, 미국 대표는 작업반 6차 회의에서 제3장의 조문안을 제안하고 설명하면서, 일국에는 민사소송만 진행 중이고, 타국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모두 진행 중일 때, 후자의 법역에 관련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요소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일이 있다. 물론 형사소송은 이번 협약의 규율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법역과 법역의 편의성 내지 적절성을 비교할 때, 즉 관련 민사소송들 중 한 법역의 것을 우선시킬지 판단할 때에는, 그 법역이 형사소송의 해결도 제공할 수 있는 법역인지도 고려요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만 9차 회의로 완성된 작업반 조문안만 보면, 이 점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법원이, 문제된 사항들의 전부나 해당 부분에 대한 완전한 또는 한층 더 완전한 해결을 제공할 개연성”(the likelihood that one court may provide a complete or significantly more complete resolution of all, or the relevant part of, the matters at issue)이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뭉뚱그려 규정할 뿐이다(제11조 제2항 f호). 그러나 이번 협약의 규율대상이 아닌 관련소송들이 동일 법역 내 별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제3장의 주도적 제안국에 의하여 언급되었고, 이 점을 전제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미법계 내지 영어권은 ‘특정 법원’이 아니라 ‘특정 법역의 법원들 전체’를 가리키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종종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번 작업반 초안에서 “보다 적절한 법원들(법정지)”(the more appropriate forum)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제3장(관련소송)에서조차 “보다 적절한 법원”(the more appropriate court)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 것인가? (심지어 미국 대표단도 이 방안에 대하여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다.) 영미권의 국제사법은 ‘특정 법원에 소제기되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그 법원의 국제·주제재판관할이 확립(establish)되면 모든 권한은 그 법원의 손 안에 있다’고 여기는 권력 중심, 재판권 중심, 사법고권(司法高權) 중심, 영토고권 중심의 사고방식에 얽매어 있다 그래서 영미권 법률가들은 forum이라는 단어를 집합명사처럼 쓰는 언어관용에 담긴 깊은 지혜를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특정 법원이 연루되었다는 눈앞의 상황에만 매달린다. 그래서 ‘저 법원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그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은 비교적 불편하므로 놓아줄 것인가’라고 물을 뿐이다. 대륙법계 가운데 특히 독일은 19세기를 거치면서 이런 재판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했다. 그러나 독일 국제민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계 대표단도 위와 같은 거친 용어 통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단지 본 보고자가 서투른 표현력으로나마, ‘국제사법에서 forum이라 하면 특정 법원이 아니라 법정지를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므로 제3장에서는 the more appropriate forum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어도 좋겠다’고 발언했을 뿐이다.

라. 조문(안)에 붙은 꺾쇠의 원칙적 존치

조문안 자체에 붙은 꺾쇠에는 원칙적으로 손대지 않았다. 조문안의 손질 차원에서 삭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문안 자체 내의 꺾쇠는, 조문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견합치에 이르러야만 없앨 수 있다. 9차 회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조문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는 제8조 제2항에 특히 초점을 맞추는 전체 하에 9차 회의 개최를 허락받았기⁷¹⁾ 때문이다. 꺾쇠는 하나의 조(條) 전체를 에워싼 것도 있고,⁷²⁾ 항이나 호를 에워싼 것도 있으며, 일정한 문구에 처진 것도 있다. 이런 꺾쇠들의 성격은 대체로 다음의 둘 중 하나이다. 하나는 그 조, 항, 호, 문구를 규정할지 말지의 문제 자체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제안된 내용과 표현대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크게 대립한 경우이다. 그래서 아예 그런 조, 항, 호, 문구 전체에 꺾쇠를 쳐 놓고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한 대상이 조(條) 전체인 때에는, 두 경우를 비교적 명확히 구별했다. 조(條)의 번호와 표제까지 꺾쇠 내에 넣음으로써 전자임을 표시했다. 조(條)의 번호와 표제에는 꺾쇠를 치지 않음으로써 후자임을 표시했다. 그러나 항과 호의 경우에는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항상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한편, 9차 회의에서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새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미완의 논점도 남았다. 그 중 일부는 주(註)의 형태로 표시되어야 했다. 그만큼 주(註)가 추가되었다.

마. 제3조의 정리

제3조(정의)에서는 조문안에 붙은 꺾쇠를 두 부분에서 삭제했다.

첫째, 중복소송을 정의하기 위하여 “on the same subject matter”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표현에 꺾쇠가 쳐져 있었다(제3조 제1항 a호).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on the same set of operative facts”라는 표현을 선호하거나, “on the same subject matter”의 문구를 쓰더라도 “on the same set of operative facts”의 뜻

71) CGAP (March 2025), Conclusions & Decisions, no. 7.

72) 조(條) 번호와 표제까지 포함하여 꺾쇠를 두른 것: 제17조(공동변론기일), 제20조(절차남용의 방지), 제21조(공서). 조 번호와 표제에는 꺾쇠가 없고 조문 전체에만 꺾쇠를 두른 것: 제19조(司法拒絶의 회피).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조문안은 “on the same subject matter”로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서서히 의견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업문서 제58호(브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는 “on the same subject matter” 문구에 붙은 꺾쇠를 삭제할 것과, 이 문구 대신 “on the same set of operative facts”라는 문구를 쓸 가능성을 언급하는 각주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둘째, 관련소송을 정의한 제3조 제1항 b호에는 꺾쇠가 둘러져 있다. 이것은 관련소송의 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고, 상세 논점에 관하여 의견이 조금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장(관련소송)이 느슨한 내용을 담았고, ‘유연한 소통장치’와 ‘공동 변론기일’ 조문의 부적용 선언을 허용할 여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관련소송의 외연이 가지는 중요성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의경과가 배경에 깔린 가운데, 작업문서 제58호는 제3조 제1항 b호를 에워싼 꺾쇠의 삭제를 제안했다. 이 작업문서가 밝힌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련소송을 다루는 제3장 전체에 꺾쇠가 쳐져 있지 않으므로 관련소송의 정의규정이 있어야 공공의견조회도 원활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소송의 정의규정을 꺾쇠 안에 묶을 것이 아니다. 이 제안은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바. 주(註)의 원칙적 존치, 각주 삭제

9차 회의에서 의장은 조문안에서 미완의 논점을 언급한 주(Note)(조, 항, 호의 말미에 기재)와 각주는 원칙적으로 삭제하고자 했다. 그 논점들은 작업반 내에서 완결하려는 취지에서 부기해 둔 것이었는데,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채 작업반이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작업반의 결과물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물론 그 논점들은 자문서(Consultation Paper)와 해설주해(Explanatory Note)에 반영될 것이다. 각주의 삭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침이 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각 조, 항, 호의 말미에 기재된 주(Note)의 일괄 삭제 방안에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회원들은 조문안에도 주와 각주를 남김으로써 오히려 가독성과 이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서에서 그 논점들을 언급하면 조문안을 찾아 읽게 되는데, 조문안에도 대응되는 기재가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의장은 본문 내 주(Note)에 대해서는 방침을 뒤집어, 원칙적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그 결과 조문안의 간결함은 감소된다. 그러나 조문안의 문맥과 전체적 설계를 이해하기에는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자문서 안에 관한 논의

가. 상설사무국이 그 원안과 제출받은 의견을 총합한 질문 목록

상설사무국은 공공자문서(외부자 참고용의 간략한 해설주해 및 질문 목록) 안을 9차 회의 전에 제시했다. 상설사무국이 기초한 자문서 안에 부기 형태로 코멘트를 제출한 교섭국은 5개국이다. 유럽합은 단독으로 제출했다.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영연합왕국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편,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의 3개국은 상설사무국의 자문서 안과 별도로, 그보다 훨씬 축약한 자문서 안을 작업문서 제56호로 제출했다. 상설사무국은 제출된 위 코멘트들 중에서 질문 부분만 모아 질문서 안 증보판을 만들었다. 이것이 작업반 9차 회의 논의의 토대가 되었다.

나. 작업문서 제56호(이스라엘,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이 공동제안한 작업문서 제56호는 자문서 안을 상설사무국 안보다 훨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을 제안한다. 자문서에 들어갈 개요 설명은 1페이지로 축약되어 있다. 그 3분의 2는 협약의 주제, 협약 교섭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 자문서의 취지와 기한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협약의 내용을 개관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아주 간결하다.

The Draft Text establishes two independent frameworks to address court proceedings taking place in multiple states in parallel proceedings (Chapter II) and related actions (Chapter III). A court seised with parallel proceedings that satisfies the jurisdiction / connection criteria set out in Article 8(2) and other criteria set out in Articles 6-7 should proceed with adjudicating the dispute, and other courts that do not satisfy these criteria must suspend or dismiss the parallel proceedings. If more than one court satisfies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rticles 6-8, and if the parallel proceedings commenced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a determination must be made as to which court is the better or more appropriate forum in accordance with one of the methods laid out in Article 9 and the factors listed in Article 10.

Articles 12 and 13 provide that courts seized with related actions may,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listed in Article 11(2), consider whether a single court should adjudicate all or part of the related actions and if so, which court is the better or more

appropriate forum.

The operation of these two frameworks is supported by a cooperation provision and a communication mechanism in Chapter IV. Several safeguards are provided in Chapter V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Draft Text.

질문 부분도 아주 간결하다. “주요 질문”(Key questions) 목록을 제시하면서, 상설사무국이 다른 질문들을 추가할 때에도 이런 형식으로 답하기 쉬운 질문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작업문서가 제시한 “주요 질문” 목록은 아래와 같다.

Key questions

1.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 necessary to address a legal gap or challenge faced by your courts or commercial bar?

A) Yes

B) No

If possible, please describe any legal gaps or challenges faced in this area and explain how that informed your answer.

2. Do the definitions of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 as provided in Article 3 of the Draft Text align with the law of your jurisdiction?

A) Yes

B) No

If possible, please address how the current definitions might be applied by parties and courts in your State in practice and whether you would recommend any changes.

3. Article 8(1)(a) provides that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will be required to suspend or dismiss the parallel proceedings if it lacks connection under Article 8(2) of the Draft Text and one or more court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has an Article 8(2) connection. Is it important to your jurisdiction to have an initial filter, as outlined in Article 8(1)(a), in ad-

dition to an appropriate forum test, as provided in Article 10? (Question 3 of the Consultation Paper)

- A) Very important
- B) Somewhat important
- C) Moderately important
- D) Not important

Please explain your answer.

4. Article 9 of the Draft Text sets out two options for approaching the role of the courts seized:

- 1. The determination of the more appropriate court by the court first seized.
- 2. The determination of the more appropriate court by court(s)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zed. Which approach do you prefer? (Question 4 of the Consultation Paper)

- A) Approach 1
- B) Approach 2
- C) None of them (suggest another approach)

Please explain the drawbacks and benefits of each option.

5. Article 10 of the Draft Text establishes a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most appropriate forum in cases of parallel proceedings that satisfy the filters outlined in Article 8, and Article 11 establishes a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most appropriate forum in cases of related actions.

Are the appropriate forum factors listed in Article 10 and 11 consistent [compatible] with your State's laws?

- A) Yes
- B) No

Please explain your answer.

6. Article 16 of the Draft Text provides four types of communication methods, either direct or indirect methods. Which methods do you consider the most plausible under a potential international convention?

- A)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 B) indirect communication via a competent authority [central authority],
- C) communication combining (a) and (b), or
- D) indirect communication through the parties.

Please explain your choice.

7. Does the Draft Text effectively address the legal gap or challenge, if any, posed by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 in your jurisdiction?

Please explain any missing elements or inconsistencies your answer.

특히 질문의 형식에 관해서는 그 제안취지 설명과 정당화를 위한 발언을 이스라엘이 전담했다. 이 점을 보면, 작업문서 제56호 전체, 혹은 질문의 형식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단독 제안이고, 멕시코와 미국이 지지하여 이름을 얹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상설사무국 초안은 전통적 질문 방식을 따랐다. 영국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통적 질문방식은 매우 완곡하고, 견해대립을 부각시키기를 피한다. 질문자는 의견대립을 가리면서 마치 화기애애하게 좋은 일만 생길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극도로 완곡한 표현으로 주관식 질문을 던진다. 답변자는 옳고 그름을, 또 의견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피하면서, 문장력을 뽐내어 우아하게 의견을 밝힌다. 상설사무국이 준비한 초안은 이런 형식이 뚜렷했다. 조약성안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상설사무국이 국가별 법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에 비하여, 한층 완곡한 어법을 채용했다. 법제 현황의 설문조사와 달리, 협약안이 가질 효용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이어서 그런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작업문서 제56호는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에 가까운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법제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인가’를 물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한 다음, 구체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문학적이고, 후자는 수학적이다. 전자는 아날로그식이고, 후자는 계량화식이다. 전자는 문과식이고 후자는 이과식이다. 이스라엘은 언어장벽과 실무가의 바쁜 일상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언어문화적 차이가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방식의 이런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다. 영어권식 의견조회를 하면,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 즉 국제병행소송 문제와 이를 다루는 협약 교섭에 정통

한 법률가들이 의견교환을 독점하게 된다.

첫째, ‘우아한 묘사 뒤에 숨겨진’ 의견대립과 이해관계 대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만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전문가들의 인적 집단은 아주 좁게 마련이다. 국제병행소송에 관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전문가회의와 작업반에서의 논의 경과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렇게 서로 잘 아는 좁은 범위의 인적 집단에서는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는 완곡어법이 필요하다. 그런 “내부자 집단”(inner circle)에 오래 몸담고 그에 걸맞은 완곡어법을 몸에 익힌 전문가들만이 적절히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다.

셋째, 답의 내용과 논지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 질문의 배경을 이루는 기존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다. 어느 교섭국을 대표한 어느 참석자가 어떤 이유를 들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가? 발언되지 않은 저변의 의견대립은 어떤 것이었는가? 일정 논점은 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으며, 교섭 참여자들이 왜 이에 대한 발언을 기피했는가? 이런 사정들을 잘 사람이어야, 교섭의 생리에 맞게끔 예리하면서도 완곡하게, 또 자신의 의견대로 의견이 모아지기 용이하게 답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적을 뿐 아니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특히 국제병행소송 조약성안작업에 가까이 관여하여 온 “내부자 집단” 소속 또는 그에 가까운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

한편에는, 대(代)를 거듭하면서 알음알음으로 “내부자 집단”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영국, 상설사무국, 또 실제로는 그에 못 미치면서도 스스로 그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기존 선진국들, 또 영어권의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식 계량화 방식에 극력 반대했다. 우아한 완곡어법에 익숙한 내부자들은, ‘예, 아니오’로 답하라, ‘좋아요’ 또는 ‘싫어요’로 답하라고 하면 당혹스럽게 마련이다. 너무 노골적으로 명쾌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을 뿐, 우아한 언어문화와 내부자 집단 구축과 인맥 쌓기에서 밀리는 학구파 신흥국 이스라엘은, 명쾌한 질문을 하고 명쾌한 답을 하여 두루 의견을 모으기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전자의 집단은 우아한 언어문화, 조직문화 유지에도 큰 관심이 있게 마련이지만, 후자의 집단은 땀 흘려 만든 협약이 실제적 효용을 발휘하며 잘 쓰이는 데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마련이다.

이스라엘은 간단히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하는 질문들만 남기고 상설사무국이 준비한 질문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작업문서에서 제안한 간단한 형식의 “핵심 질문들”을 추가하자는 취지라고 석명하면서, 이런 제안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언어장벽과, 변호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답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변호사들이 질문에 응하기 위하여 넘어야 하는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들었다. 질문과 답변의 내용 면에서도, 복잡한 답을 구하고 복잡한 답을 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등이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의(아르헨티나, 중국 등)견과 적극적 반대의견(영연합왕국, 캐나다, 호주 등)이 나뉘었는데,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영연합왕국은 반대의견의 논거로, 피상적 답을 얻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 답변자의 솔직한 답변을 그대로 모으는 것이 이번 의견조회의 취지라는 점, 언어장벽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번역으로도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스위스도 반대의견이었는데, 질문에 일일이 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 말하고 싶은 의견’의 형식으로 각자의 일반적 평가를 진술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가적 논거로 들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답이라도 환영한다’는 점을 질문서 상에 분명히 기재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등이 제안하는 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2인의 참석자의 의견이 나뉘었다. 1인은 이스라엘 등의 제안에 반대했는데, 숙고된 의견이 중요하고, 짧아도 상관없다는 점, 그리고 선다식의 질문은 단순하고 비학문적인 답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나머지 1인은, 이스라엘 등이 제안하는 방식의 질문목록과, 원래 생각했던 질문목록을 병용하여,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답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의장은 반대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지금은 양적 조사를 할 시점이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의 자문의 목적은 현재 조문안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초점이 있으므로, 양적 조사의 적절한 대상이 못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안 방식과 이스라엘 방식을 병용하는 투트랙으로 하면 상설사무국의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등이 주장하는 간소화된 질문방식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IV. 향후 절차

첫째, 9차 회의까지 거친 작업반의 결과물로 우선 작업반 초안이 나왔다. 이 초안은 상설 사무국의 교열과 윤문을 거쳐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⁷³⁾ 2026년 상무정책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가 결정되면, 홈페이지 “Projects” 창 아래 “Legislative Work” 창 아래 “Jurisdiction” 창 내에 “특별위원회” 란이 추가되고, 그 부분에 작업반 초안(완성본)이 추가로 수록될 것이다.

둘째, 작업반 9차 회의와 이를 전후한 활동(정확히는 회계연도 2025년의 활동)은 2026년 상무정책이사회(Council of General Affairs and Policy, CGAP)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작업반 초안을 부록에 수록하여, 2026년 상무정책이사회 서류의 하나로서 2026년 2월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⁷⁴⁾

셋째, 2025년 상무정책이사회에서 위임받은 대로, 상설사무국은 작업반 9차 회의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고 참고하여, 해설주해(“explanatory notes”)과 질문 목록으로 구성되는 공공 의견조회(public consultation)서를 확정하고, 이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

73) “Projects” 창(窓, menu) 아래, “Working / Experts Groups” 창 아래, “Working Group on Jurisdiction” 창 내, “Key documents on the Jurisdiction Project” 란. 이 란에는 지금까지 매년 상무정책이사회에 제출된 작업반 보고서(소위 “의장 보고서”)가 게재되어 있고, 그 제출 당시의 조문안이 보고서 부록으로 실려 있다. 작업반 회의를 1개 회계연도에 두 차례 한 경우에는, 그 중 첫 번째 회의만 거친 후의 조문안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그 두 번째 회의까지 거친 후의 조문안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재판협약의 예를 보면, 나중에는 작업반의 각 회의별로 그 회의 후 조문안을, 상설사무국 작성 문서들—예비문서(Preliminary Documents), 정보문서(Information Documents), 기타 참고용 연구조사 문건 등을 포괄—과 함께 정리하여 수록한다. “Projects” 창 아래, “Legislative Work” 창 아래, “Jurisdiction” 창 내, “Key documents on the Jurisdiction Project” 란. 넓은 의미의 Judgments Project, 즉 Jurisdiction and Judgments Project—2001년 외교회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던 ‘직접관할, 국제병행소송, 외국판결 승인집행을 모두 다루는 조약’ 성안작업부터, 직접관할 부분을 다루는 문건을 만든다면 그 작업까지—가 마무리되면, 위 공개 문서들의 홈페이지상 수록 위치는 “Instruments” 창 아래, “Conventions and other instruments” 창 아래에, 해당 조약 부분에만 수록되게 된다. 그런데 2019년 재판협약의 예를 보면, 작업반 회의별 문서의 경우 연도별 보고서(조문안 포함)만 수록하고 있어, “Projects” 창 아래, “Legislative Work” 창 아래, “Jurisdiction” 창 내, “Key documents on the Jurisdiction Project” 란에 수록된 문서들보다 오히려 공개범위가 약간 좁은 역설적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74)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창 아래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창 내에 수록될 것임. 차년도(次年度) 상무정책이사회의 준비가 시작되면, 과년도(過年度) 상무정책이사회에 관한 서류들은 “Archive” 창 내로 옮겨진다.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창 아래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창 아래 다시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창 아래 “Archive (2000-해당 연도)” 창 내.

고⁷⁵⁾ 회원들에게 송부하게 된다. 작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2026년 상무정책이사회(3월 개최) 전에 공개 및 송부될 것이다.

한국도 회원국으로서 이 자문서를 일반에 회람시키고, 실무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설사무국에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자문서가 예정하는 의견조회대상(한국 변호사법상의 변호사가 유일한 또는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으로부터 널리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 절차는 유연하게 정해도 좋을 것 같다.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절차의 일부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자문서(간략한 해설주해와 질문 목록) 원문을 게시하고 그 한국어 번역을 참고용으로 게시하면서 ‘영어로만 서면회신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병행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나 사내변호사들의 단체, 변호사들도 다수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사법 분야의 학술단체(국제사법학회 등)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런 의견수렴절차가 언제의 기한까지 진행됨을 알리고 회신을 독려하면 좋을 것이다.

실무가들의 협회가 실무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도 물론 환영할 일이다. 이번의 자문서 전에도 IBA는 나름의 방식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읊저버로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기관의 의견으로서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번에 예정된 공공의견조회회의 취지는, 기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스스로 국제민사소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화라는 안타까운 현실도 그 기관에 의한 의견 종합진술에 대한 기대를 잠식한다.⁷⁶⁾

75) “Projects” 창 아래 “Working / Experts Groups” 창 아래 “Working Group on Jurisdiction” 창.

76)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는 (법무부의 법무심의관실과 법제처에 대응하여) 법제정비에 헌신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한다. ‘정치적 안전 목록’(political agenda)에 압도되어 체계적으로나 이익형량 면에서 문제 있는 입법안이 나온 경우, 법제위원회의 전통적 대응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에 물든 특별법 남발과 경솔한 입법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치(法治)의 전통이 약하고 법적 안정성을 가깝게 여기는 한국의 법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변호사단체의 정치화는 대한변협 법제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을 종종 위협한다. 협회장 선거가 정치적으로 과열되면서, 특정 정치성향(특히 운동권형 좌파)을 가진 협회장이 정치적 관심과 편향을 공유하는 회원들로 대한변호사협회 보직을 채우는 일은 예삿일이 되었다(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준 데 대한 보답, 또는 정치화된 대한변협 내 역할 부여). 그런 일부 정치지망생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을 통하여 정계 진출을 준비한 후, 행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에 진출하여, 그 정치성향에 오염된 무리한 입법안을 만든다. 그러면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는 의견서로 조응한다. 이렇게 관민(官民) 양쪽에서 졸탁동시(喆喆同時)(첫 글자는 ‘口’ 변에 ‘卒’자를 써서 ‘쫓을 줄’)

넷째, 상설사무국은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해설주해(Explanatory Note)를 작성하게 된다. 이 작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면 상무정책이사회의 위임(mandate) 내지 의뢰(invitation)가 있어야 한다. 2019년 재판협약 교섭과정에서도, 상무정책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면서, “제안된 조문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미결 논점들을 확인하는, 특별위원회를 위한 해설주해” 작성을 상설사무국에게 부탁했다.⁷⁷⁾ 이렇게 작성된 특별위원회용 해설주해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⁷⁸⁾

그런데 이번 협약의 교섭과정에서는 공공의견조치를 위하여 조약안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필요하여, 상무정책이사회 2025년 회의에서 이미 이를 위한 “해설주해”(explanatory notes) 작성을 의뢰했다. 그래서 상설사무국은 공공자문용 해설주해 속에 질문을 넣어 한 건의 문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자문서 초안이다. 그 내용은, 작업반이 설치된 이래 그 의장이 매년 상무정책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가깝다. 그것을 증보한 정도이다. 상설사무국은 작업반 9차 회의 논의도 고려하여 자문서를 완성할 것이다. 상설사무국이 특별위원회용 해설주해를 만들 때에도 공공자문용 해설주해를 증보하는 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문서의 역할을 다르다. 공공자문용 해설주해는 실무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

로 호흡을 맞춘다. 뜻하지 않게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변호사의 공익봉사활동의 제도화이다(대한변협 회칙 및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변호사는 늘고, 공익활동을 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법제위원회 참석과 의견서 제출을 ‘변호사의 공익봉사시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법제 정비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별 생각 없이, 그저 사무실로 빨리 돌아가려는 생각 속에서 법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늘었다. 이렇게 공익봉사 시간을 가볍게 “때우기” 위하여 몰려온 회원들은 “거수투표기”로, 일종의 “군중”으로 전락한다. 물론 이 때문에 법제위원회의 논의와 의견에 항상 큰 문제가 생기도록 운명지워진 것은 아니다. 회의 진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를 모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향의 입법안이 나왔으며, 위원장이 지지 표명에 열의를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위원장은 논의를 형식화한 채, 의견일치(컨센서스)의 추구조차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결론 내리려고 서두르게 된다. ‘법제위원회의 본연에 임무에 맞는 신중한 의견’이 개진되면, 지혜를 모으고 의견이 합일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위원회다운 신중론을 억누른 채 거수투표를 서두르려 한다. 그러면 거수기로 전락한 다수 참석자들은 “예스맨”으로서 위원장 편을 들어 준다. 그러면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하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특정 회원에게 ‘법제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임한다. 이렇게 ‘실질적 논의도, 의견일치의 추구도 없이 투표로 가결하여 이긴 쪽 의견에 맞게, 그것도 위원장이 미리 점찍어둔 특정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작성된 의견서’가 대한변협 법제위원회의 의견서로서의 본연의 의미를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 현안에 매몰된 법제위원회가, 국제사법처럼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하고 정치와 무관한 분야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77) “a note for the attention of the Special Commission, providing background to the Proposed Draft Text and identifying outstanding issues”.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of the Conference (15-17 March 2016), Conclusions & Recommendations, no. 12.

78) “Projects” 창 아래 “Legislative Work” 창 아래 “Jurisdiction” 창 내 “Special Commission” 란.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간결할수록 좋다. 특별위원회용 해설주해는, 작업반에는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작업반에서 확인된 미해결 논점과 까다로운 고려들을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한층 학술적이어야 하고, 첨단의 세부 논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용 해설주해는 자세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 부록: “병행소송 및 관련소송에 관한 후속 논의용 조문안”(Draft of the provisions on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 for future discussion){약칭 “Draft Text”(작업반 초안)}
- 이 조문안 상의 변경표시는 작업반 9차 회의에서 수정, 보완된 부분을 표시한다.
 - 변경 표시된 이 조문안은 공개된 문서가 아니다.
 - 상설사무국의 교열과 윤문을 거치고 변경 표시를 정리한 완성본은 조만간 공개될 것이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홈페이지 게재되고(주 61 및 해당 본문 참조), 상무정책이사회 2026년 회의(2026. 3. 개최 예정)에 제출될 ‘(국제) 재판관할 작업반’(Working Group on Jurisdiction) 보고서에도 부록으로 실릴 것이다(주 62 및 해당 본문 참조). 작업반은 매년도 상무정책이사회에 활동(논의)경과 및 ‘작업 중 조문안’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WG JURISDICTION

OCTOBER 2025

REVISED DRAFT TEXT



Draft of the provisions on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 for future discussion

CHAPTER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Scope

1. ~~This Convention e provisions in this text~~ shall apply to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 in the courts of different Contracting State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The provisions in this text shall not extend in particular to revenue, customs or administrative matters.~~
2. ~~[This Convention e provisions in this text~~ shall apply to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 if [any of] the defendant[s] in [any of] the proceedings in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is][are] habitually resident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3. ~~The provisions in Chapter III~~ shall apply only where none of the courts seised of related actions has issued a decision on the merits.

Article 2 Exclusions from scope

1. ~~This Convention provisions in this text~~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matters –
 - (a) the status and legal capacity of natural persons;
 - (b) maintenance obligations;
 - (c) other family law matters, including matrimonial property regimes and other rights or obligations arising out of marriage or similar relationships;
 - (d) wills and succession;
 - (e) insolvency, composition, resolu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ogous matters [,except where the proceedings are based on general rules of civil or commercial law, even if the action is brought by or against a person acting as insolvency administrator in one party's insolvency proceedings];
 - (f)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goods;
 - (g) transboundary marine pollution, marine pollution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ip-source marine polluti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and general average;
 - (h)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 (i) the validity, nullity, or dissolution of legal persons or associations of natural or legal persons, and the validity of decisions of their organs;
 - (j) the validity of entries in public registers;

- (k) defamation;
- (l) privacy;
- (m) intellectual property;
- (n) activities of armed forces, including the activities of their personnel in the exercise of their official duties;
- (o) law enforcement activities, including the activities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in the exercise of their official duties;
- (p) anti-trust (competition) matters, except where the proceedings are based on conduct that constitutes an anti-competitive agreement or concerted practice among actual or potential competitors to fix prices, make rigged bids, establish output restrictions or quotas, or divide markets by allocating customers, suppliers, territories or lines of commerce, and where such conduct and its effect both occurred in the State where the proceedings are pending;
- (q)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through unilateral State measures;
- [(r) to be determined.]⁴

[Note: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s and interim measures for protection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2. Proceedings are not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rovisions~~this Convention where a matter to which ~~this provisions~~Convention does not apply arose merely as a preliminary question in the proceedings, and not as an object of the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mere fact that such a matter arose by way of defence does not exclude proceedings from the ~~provisions~~Convention, if that matter was not an object of the proceedings.
3. ~~This Convention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arbitration and related proceedings.
4. This ~~instrument~~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roceedings related to contracts concluded by natural persons acting primarily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consumers).
5. This ~~instrument~~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roceedings related to individual contracts of employment.
6. Proceedings are not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provisions~~ by the mere fact that a State, including a government, a governmental agency or any person acting for a State, is a party to the proceedings.
7.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ovisions~~ shall affect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States or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respect of themselves and of their property.

[Note: Matters involving claims by or on behalf of victims of terrorism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⁴—Before the discussion of the second WG meeting, there was a limb excluding from scope “cases in which the law of one or more of the Contracting States involved provides for exclusive jurisdiction in their own courts”. It was deleted becaus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ose cases would be dealt with by the declaration mechanism (Art. 22 of the Revised Draft Text). However, the WG will revisit the issues concerning exclusive jurisdiction including the possible exclusion from the scope.

Article 3 Definitions

1. In this Convention –
 - (a) “parallel proceedings” means any proceedings in courts of different Contracting States between the same parties ~~[on the same subject matter]~~²;
 - (b) “related actions” means any proceedings in courts of different Contracting States that are not “parallel proceedings” and that involve:
 - (i) parties at least some of which ar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or connected to each other;
 - (ii) [facts that arise, in whole or in material part, from the same transaction, occurrence, or series of transactions or occurrences;] and
 - (iii) one or more common questions of law or [material] fact that create a risk of [irreconcilable] [inconsistent] findings or judgments [resulting from separate proceedings]].
2. An entity or person other than a natural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be habitually resident in the State –
 - (a) where it has its statutory seat;
 - (b) under the law of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formed;
 - (c) where it has its central administration; or
 - (d) where it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Not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clusion of text in the Draft Text or referring to this in the Explanatory Note to clarify that where a proceeding is pending in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the fact that a related court order to compel or restrain the performance of any act is sought in a court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does not give rise to parallel proceedings and may not give rise to related ac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Draft Text.]

[Article 4 Court seised

For the purpose of [Chapter II], a court shall be deemed to be seised –

- (a) when the document instituting the proceedings or an equivalent document is lodged with the court; or
- (b) if such document has to be served before being lodged with the court, when it is received by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service or served on the defendant.]

[Note: Inclusion of this provision does not mean the adoption of certain types of rules [on first in time] for the suspension of proceedings.]

[Note: This Article could potentially apply not only to Chapter II, but also to the Convention as a whole.]

[Note: The WG will need to ensure that these rules are workable for their national systems. Further changes may be necessary to the text.]

² The term “on the same set of operative facts” was not included in the text becaus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inclusion of this term alone might cause problems. However, the WG will revisit the issue of the definition of parallel proceedings.

CHAPTER II PARALLEL PROCEEDINGS

Article 5 *Suspension, dismissal and resumption of parallel proceedings*

1. A court that must suspend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shall do so as soon as it is informed] of the proceedings in the other court by a party, [other relevant person,] or through the communication mechanism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6.
2. A court that suspended its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shall dismiss the case if the proceedings in the court for the benefit of which proceedings were suspended resulted in a judgment capable of recognition and, where applicable, of enforcement in that Contracting State.
3. A court that suspended its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shall, on request of a party, proceed with the case if the court for the benefit of which proceedings were suspended [is unlikely to render] [has not rendered] a judgment on the merits [within a reasonable time].

[Note: For the situation provided in paragraph 1, the possibility of dismissal instead of suspension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Note: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on the detailed rules is required.]

Article 6 *[Exclusive][Priority] jurisdiction / connection*

Where parallel proceedings which have as their [main] object rights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 tenancies of immovable property, or the registration of immovable property] are pending before courts of Contracting States and the property is situated in one of those Contracting States, the cour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s situated shall proceed with adjudication on the dispute. Any other court shall [, on application by a party,] suspend [or dismiss] the proceedings.

[Note: Application of this rule to parallel proceedings which have as the [main] object tenancies of immovable property or the registration of immovable property should be discussed further.

Further consideration is necessary as to whether registration includes recordation and whether this term can be added to the text as well.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to address whether the rule on tenancies should include an exception for cases where the tenant is habitually resident in a different State.

~~The WG will need to consider~~ Further consideration is needed as to further how the above provision aligns with Article 5(3) of the 2019 Judgments Convention.]

Article 7 *Party autonomy*

1. Subject to Article 6, if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in both / all courts have agreed prior to the dispute that one or more courts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nd only one of the courts seised is designated under such agreement as having jurisdiction, then that court shall proceed with adjudication of the dispute unless such agreement states that it does not deprive any other court or courts of jurisdiction. Any other court shall suspend the proceedings.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ubparagraph,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concluded by two or more parties that designates, for the purpose of deciding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a particular legal relationship, the courts of one State or one or more specific courts of one State to the exclusion of the jurisdiction of any other courts. A choice of court

agreement which designates the courts of one State or one or more specific courts of one State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 unless the parties have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3. Subject to Article 6, if the defendant expressly [and positively] consen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by written or oral format and addressed either to the court or to the claimant]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s, then that court shall proceed with adjudication of the dispute. Any other court shall stay or dismiss adjudication of the dispute.

[Note: Possible need to address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non-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with purely prorogatory effect, and ~~or~~ waivers of objections to jurisdiction, either in this Article, in Article 8(2), or in the rules on the more appropriate ~~or better forum~~ court analysis.]

[Note: Relationship between paragraph 1 and paragraph 3 should be discussed further.]

[Note: Fo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formal validity of the agreement needs to be considered further. Cf. Article 3(c) of the 2005 Choice of Court Convention.]

[Note: Certain limitations of the timeframe within which the defendant should consent might need to be considered further.]

Article 8 Jurisdiction / Connection

1. Subject to Articles 6 and 7, where parallel proceedings are pending before the courts of Contracting States,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suspend or dismiss the proceedings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proceedings] if –
 - (a) it does not have jurisdiction / connection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one or more of the other courts has or have such jurisdiction / connection; or
 - [(b) proceedings in that court were not started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after proceedings were commenced in the court first seised having jurisdiction / connection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Note: The meaning of “a reasonable timeframe” in sub-paragraph (b)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timeframe issues may be dealt with by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the ~~clearly~~ more appropriate ~~most appropriate~~ better forum court analysis. The Further discussion on these issues is needed ~~WG needs to discuss these issues further. Further rule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ore appropriate~~ better forum court analysis.]

This Article is added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ility that the WG will specify further circumstances in which courts would be required to suspend or dismiss the proceedings.

2.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has jurisdiction / connection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 met –
 - (a) the defendant was habitually resident in that State at the time that person became party to the proceedings;

[Note: Possible need to define the term “defendant”, as a defendant may be a claimant in another State – adopt language of Article 5(1)(a) of the 2019 Judgments Convention, specifying the time at which the defendant was joined to the proceedings. Also, need to clarify the situation of multiple defendants.]

- (b) the defendant is a natural person who had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at State at the time that person became party to the proceedings as regards a [dispute] [claim] arising out of the activities of that business;
 - (c) the defendant maintained a branch, agency, or other establishment without separate legal personality in that State [or registered to do business in that state] at the time that person

became party to the proceedings in that State, and the claim arose out of the activities of that branch, agency, or establishment [or the matters covered in that registration];

[Note: Or should the timing be tied to the activities of that branch, agency or other establishment?]

- (d) [the proceedings have as their object] [the claim concerns] [the action concerns] a contractual oblig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at obligation took place, or should have taken place, in that State, in accordance with –
 - (i)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 (ii)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in the absence of an agreed place of performance,unless the activities of the defendant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clearly did not constitute a purposeful and substantial connection to that State;

[Note: Which phrase, [the proceedings have as their object], [the claim concerns], or [the action concerns] should be adopted needs further consideration also for sub-paragraphs (d)-(h).]

- (e) the claim [is brought on] [concerns] a lease of immovable property (tenancy) [or the registration of immovable property] and the property is situated in that State;
- (f) the claim concerns a contractual obligation secured by a right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located in the State, if the contractual claim is brought together with a claim against the same defendant relating to that right *in rem*;
- (g) a claim concerns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from death, physical injury, damage to or loss or loss of value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or unjust enrichment and –
 - (i) the act or omission directly causing such harm or enrichment occurred in that State, irrespective of where that harm or enrichment occurred; for
 - (ii) the harm was suffered in that State as the result of conduct specifically directed toward that State; or
 - (iii) the claim arises out of goods,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placed into or directed at the market of that State, where the defendant purposefully engaged with that market and the claim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ose activities;
- (h) the claim concerns the validity, construction, effects, administration or variation of a trust created voluntarily and evidenced in writing, and –
 - (i) at the time the proceedings are instituted, the State was designated in the trust instrument as a State in the courts of which disputes about such matters are to be determined; or
 - (ii) at the time the proceedings are instituted, the State is expressly or impliedly designated in the trust instrument as the State in which the principal place of administration of the trust is situated.

This sub-paragraph only applies to proceedings regarding internal aspects of a trust between persons who are or were within the trust relationship;

- (i) a counterclaim arises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 as the original claim, if the court of the State has [priority] [jurisdiction] [connection] for the original claim under this Article and the original claim is pending in that court;
- (j) the defendant argued on the merits without contesting jurisdiction within the timeframe provided in the law of the State of the court, unless it is evident that an objection to jurisdiction or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would not have succeeded under that law;

[Note: Should this connecting factor in (j) be prioritised? It should be considered to whom “it is evident”.]

[(k) the proceedings [are *in rem* and concern] [have as their object] ownership or possession of rights in [tangible] movable property located in that State [at the time the court was seised];]

[(l) to be determined.]

[Note: Interaction of this paragraph with Articles 6, 7, or 9 needs further consideration.]

[Note: Substantial further discussion and work on Article 8 is required to address concerns raised by several WG members as to its purpose, scop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including the potential for tactical litigation.]

[Note: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multiple defendants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particular, whether the priority connections should be assessed either for each claim against each defendant or for the proceedings as a whole.]

Article 9

Determination of the more appropriate court

1. Subject to Articles 6 and 7, where parallel proceedings are pending in the courts of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that have jurisdiction / connection under Article 8, [the court first seised shall determine, on an application by a party [made no later than the first defence on the merits] [made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whether any other seised court in a Contracting State with jurisdiction / connection under Article 8 is a more appropriate court to resolve the dispute. When making this determination the court first seised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actors in Article 10.
- 2.] Any court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sed [shall][must] [, on an application by a party,] suspend its proceedings in favour of the court first seised [pen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3. If, following a determination made under paragraph 1, the court first seised determines that another seised court is a more appropriate court, the court first seised shall suspend its proceedings in favour of that court and may only resume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3).
4. If, following a determination made under paragraph 1, the court first seised decides to continue proceedings, a court that has suspended proceedings under paragraph 2 may only resume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r Article 5(3).
5.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appropriate], a court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sed may, on an application by a party, resume proceedings if:
 - (a) the application is made [no later than the first defence on the merits]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within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determination in the court first seised]; and
 - (b) the court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sed determines that [Option 1: it must hear the case to guarante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Option 2: it is the more appropriate court to resolve the disput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in Article 10] [Option 3: it is the clearly more appropriate court to resolve the disput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in Article 10].
6. A court making a determina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do so expeditiously. Courts are encouraged to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the communication mechanism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6 and may do so at any stage of the determination.

[Note: this Article has interlinked brackets to reflect different views in the WG concerning the role of the court first seised. The following sets out the text excluding the words that are undoubtedly included in

the interlinked brackets (with the yellow highlighted changes of (i) the numbering of the paragraphs and (ii) a capital letter to small letter), clarifying the alternative basic framework reflecting a different view:

1. Subject to Articles 6 and 7, where parallel proceedings are pending in the courts of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that have jurisdiction / connection under Article 8, any court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sed [shall][must] suspend its proceedings in favour of the court first seised.
2.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appropriate], a court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sed may, on an application by a party, resume proceedings if:
 - (a) the application is made [no later than the first defence on the merits]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and
 - (b) the court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sed determines that [Option 1: it must hear the case to guarante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Option 2: it is the more appropriate court to resolve the disput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in Article 10] [Option 3: it is the clearly more appropriate court to resolve the disput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in Article 10].
3. A court making a determina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do so expeditiously. Courts are encouraged to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the communication mechanism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6 and may do so at any stage of the determination.

Whether or not the remaining brackets are the interlinked brackets and what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the above-mentioned different views remain open for consideration.]

[Note: Issues concerning the provisions for non-priority [connection] [jurisdiction] should be considered further.]

Article 10

Factors use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learly~~ more appropriate ~~most appropriate~~ better forum court

In making a determination under Article ~~9~~ 10, the court shall [have regard to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aking]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in particular:

- (a) [The burdens of litigation on the parties][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including in view of their habitual residence;
- (b) The [relative] ease of accessing evidence or preserving evidence;
- (c) [the law applicable to the claims];
- (d) the stage of the proceedings before each court seised [and any applicable 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s] [and the possibility of significant delay in one or more ~~forums~~ courts];
- (e) [the likelihood that one court may provide a complete or significantly more complete resolution of the dispute as a whole;] and
- (f) the likelihood of recognition and, where applicable, enforcement of any resulting judgment given in the Contracting State of any other seised court.

The courts may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the communication mechanism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6.

CHAPTER III RELATED ACTIONS

Article 11

Determining Determination of the ~~the [better]~~ [more appropriate] forum court an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1. Where related actions are pending in the courts of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any such court shall, upon application of a party, determine within a reasonable time:
 - (a) Whether a single court should adjudicate the entirety or any part of the related actions; and if so,
 - (b) Which court is ~~the [better]~~ [more appropriate] forum for resolution of the entirety or any part of the related actions.

[Note: In this model, parties may make applications to multiple courts and each court would reach its own independent determination of the application before it. However, furth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form of applications in the respective courts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n order for the determinations.]

[Note: Furth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the phrase “a single court should adjudicate” adequately reflects the intended purpose and whether (a) and (b) can / should be separated.]

2. In making its determination of which court is ~~the [better]~~ [more appropriate] forum, a court shall conside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 [(a) [the burdens of litigation on the parties]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including in view of their habitual residence;
 - (b) the [relative] ease of accessing evidence or preserving evidence;
 - (c) [any choice of court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 (d) [the law applicable to the claims];
 - (e) the stage of the proceedings before each court seised [and any applicable 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s] [and the possibility of significant delay in one or more ~~forums~~ courts];
 - (f) [the likelihood that one court may provide a complete or significantly more complete resolution of all, or the relevant part of, the matters at issue;] and
 - (g) the likelihood of recognition and, where applicable, enforcement of any resulting judgment given in the Contracting State of any other seised court.]

[Note: The related actions framework proposed herein does not require that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has a connection / jurisdictional ground such as those set forth in draft Article 8(2). The related actions framework is intended to be flexible and discretionary. ~~We-It was understood understand that~~ this may raise concerns for some delegations where one court's jurisdiction is based on a so-called “exorbitant” ground. These concerns can be addressed in the ~~the [better]~~ [more appropriate] forum court factors—taking into account all relevant sensitivities in drafting. This list remains non-exhaustive and subject to further ~~consideration~~ discussions of the Working Group.]

Article 12

Adjudication of related actions in their entirety by a single court

1. For the purposes of an application of Article 11, if two or more courts seised of related actions determine that:
 - (a) a single court should adjudicate the entirety of the related actions; and
 - (b) the same court seised is ~~the [better] [more appropriate] forum~~ for the adjudication of the related actions in their entirety,that court shall [proceed with adjudication of] [adjudicate] the entirety of the related actions case, and the other court(s) making the determinations shall suspend or dismiss their case(s).
2. Nothing in this ~~provision~~ Article precludes two or more of the courts seised from adjudicating the entirety of the related actions pending before them, if one or more other courts seised do not make the determinations in paragraph (1) within a reasonable time or make inconsistent determinations.

[Note: Furth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use of the word “Adjudication” and possible alternative descriptions.]

Article 13

Adjudication of related actions in part by a single court

1. For the purposes of an application of Article 11, if two or more courts seised of related actions determine that:
 - (a) a single court should adjudicate part of the related actions; and
 - (b) the same court seised of a related actions case is ~~the [better] [more appropriate] forum~~ for that part of the related actions,that court shall [proceed with adjudication of] [adjudicate] that part of the related actions, and the other court(s) making the determinations shall suspend or dismiss that part of the related actions.
- [2. Nothing in this ~~provision~~ Article precludes the courts from determining that different parts of the case may be most appropriately assigned to different courts.]
3. Nothing in this ~~provision~~ Article precludes two or more of the courts seised from adjudicating any part of the related actions pending before them, if one or more other courts seised of related actions do not make the determinations in paragraph (1) within a reasonable time or make inconsistent determinations.

[Note: The possibility to allow partial consolidation, as well as the most appropriate way to draft such a rule, should be further discussed taking into account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whether such rules could further the goals of this chapter, namely improved procedural efficiency and the avoidance of irreconcilable judgments.]

Article 14

Continuation of separate proceedings

1. If any court seised decides not to adjudicate the entirety of the related actions under Article 12 or any part of the related actions under Article 13, or makes a determinat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determination of any other court under Article 12 or Article 13, then such a court shall proceed with the related actions case before it.

2. If one or more courts seised do not make the determinations under Article 12 or Article 13 within a reasonable time, any other court seised may, upon application of a party or on its own motion, [proceed to adjudicate] [adjudicate] the proceedings before it.
3. Any court seised that has suspended the entirety or any part of its proceedings under Article 12 or Article 13 may resume proceedings if the court in favour of which it has suspended its proceedings has not assumed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entirety or the relevant part of proceedings within a reasonable time.

[Note: Furth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 possible third scenario in which one of the courts initially seised has suspended proceedings pending a determination in another court seised of only part of the proceedings before it, after which the court that has suspended will need to resume its own proceedings, taking into account the findings of the other court.]

[Note: The related actions framework proposed herein does not specifically address a related action case requiring a determination of rights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Further consideration will be given as to how to best address this topic within the framework.]

CHAPTER IV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rticle 15 *Co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ere appropriate, seised courts [undertake] [are encouraged]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part of that cooperation, courts are encouraged to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the communication mechanism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6 and may do so at any stage when making a determination under this Convention.

Article 16 *Communication mechanism*

1.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ach court may communicate with other court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2. Contracting States may,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notif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epositary of the Convention, that they will allow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thods of communication:
 - (a) direct judicial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and if so, whether their laws allow for communication outside the presence of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ex parte* communication); or
 - (b) indirect judicial communication through a competent authority [central authority]; or
 - [(c) a combination of (a) and (b) with each Contracting State using its preferred method.]
3. The absence of such notification means that the Contracting State in question allows only for indirect communication through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4. Any communication, where appropriate, shall occur in the following manner:
 - (a) The initial communication under this article from each court seised of parallel proceedings or related actions shall be in writing and be provided either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receiving court, or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sending court together with a translation into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receiving court.

- (b) Further communications between such courts may be carried out using any translation method or common language agreed upon by the relevant courts and, where applicable, the competent authorities [central authorities].]

[Note: The possibility for a Contracting State to withdraw from the method(s) provided in paragraph 2 by a not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further.]

**[Article 17
Joint hearings**

1. Contracting States may,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notif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epositary of the Convention, that they will allow courts seised of parallel proceedings or related actions to conduct joint hearings.
2. If the Contracting States of two or more courts seised of parallel proceedings or related actions cases allow joint hearings under paragraph 1, then such courts may conduct a joint hearing.
3. Courts participating in a joint hearing under this article shall agree on the scope, process, format, and other aspects related to the joint hearing, which may be based on a proposal by the parties. Each court participating in a joint hearing shall retain power and independence over the conduct of its own proceeding, consistent with applicable national laws.]

[Note: The possibility for a Contracting State to withdraw from joint hearings by a not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further.]

**Article 18
[Sovereignty,] procedural rights, and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ny communication and joint hearings set out in this Chapter shall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and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der the respective applicable national laws.

**CHAPTER V
GENERAL CLAUSES**

**Article 19
Avoiding denial of justice**

[Nothing in ~~this present~~ Convention shall prevent a court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if that court determines it is reasonable and foreseeable that its exercise is necessary in order to avoid a [manifest] denial of justice.]

**[Article 20
Prevention of abuse of proces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court from suspending, dismissing, continuing or resuming proceedings to prevent an abuse of process.]

**[Article 21
Public policy**

Notwithstanding provisions from Article # to Article #, the court shall not be obligated to suspend or dismiss the case if the proceedings may involve sovereignty or security interests of the forum State or the suspension or dismissal would be manifestly incompatible with the public policy or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forum State.]

**Article 22
Declarations with respect to specific matters**

1. Where a State has a strong interest in not applying this Convention to a specific matter, that State may declare that it will not apply the Convention to that matter. The State making such a declaration shall ensure that the declaration is no broader than necessary and that the specific matter excluded is clearly and precisely defined.
2. *[Reciprocity to be considered]*

**Article 23
Uniform interpret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shall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